

#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운영개선방안

2009. 12.



## 연 구 진

### 연구책임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연구진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완 (경원대학교 강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박사)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	2
II.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법적 기능 및 역할 .....	3
1. 광역경제권 추진체계 .....	3
2.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의 구성과 역할 .....	7
1)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법적 규정 .....	7
2) 기구별 구성 및 기능 .....	9
III. 국내외 유사 사례분석 .....	17
1. 국내 유사기구와 비교분석 .....	17
1) 행정협의회 .....	17
2) 지방자치단체조합 .....	19
3) 종합검토 .....	23
2. 해외의 지역간 협력사업 추진기구 사례분석 .....	24
1) 분석 개요 .....	24
2) 영국의 광역적 지역협력시스템 .....	25
3) 일본의 광역지방계획권역 .....	37
4) 프랑스의 광역행정체계 .....	48
5) 시사점 .....	61

IV.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운영실태분석 .....	65
1. 7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구성현황 .....	65
1)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	65
2) 사무국 .....	71
2. 충청권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사례분석 .....	73
1) 충청권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구성 실태 .....	73
2) 충청권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유관기관 운영실태 .....	75
3. 문제점 및 개선과제 .....	78
1) 운영실태상 문제점 .....	78
2) 향후 개선방향과 과제 .....	80
 V. 개선방향 .....	 81
1. 광역발전위원회(광역위)의 기능강화 .....	81
2. 광역위와 지역위 간의 협력·지원 강화 .....	82
3. 광역위의 운영 내실화 .....	83
4. 광역위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 .....	84
 ※ 참고문헌 .....	 85

## 표 목 차

<표 3-1> 영국의 광역경제권 현황 .....	8
<표 3-2> 연도별 광역연합 설치상황 (2000년 4월 1일 현재) .....	45
<표 3-3> 일본의 광역연합 설치상황 (2000년 4월 1일 현재) .....	45
<표 3-4> 레지옹 간 협약 현황 .....	53
<표 4-1>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권역별 위원 .....	6
<표 4-2>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직종별 위원구성 .....	6
<표 4-3> 충청권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구성 (2009.12. 현재) .....	73
<표 4-4> 충청광역경제권 추진팀 구성 .....	7

## 그림목차

<그림 2-2> 광역경제권 발전 목표 및 추진 전략 .....	4
<그림 2-3> 5+2 광역경제권 설정 .....	5
<그림 2-4> 광역경제권발전사업 추진체계 .....	6
<그림 2-5> 사무국 조직도 예시 .....	3
<그림 3-1> 영국의 지역계획 체계 .....	8
<그림 3-2> 영국의 MAA 현황 .....	2
<그림 3-3> 잉글랜드의 LALB 대상 지역 .....	36
<그림 3-4> 일본의 인구 및 고령화율 전망 .....	3
<그림 3-5> 일본 국토계획체계의 개편 방향 .....	3
<그림 3-6> 일본의 광역지방계획 대상권역 .....	4
<그림 3-7> 전국계획과 광역지방계획의 관계 .....	4
<그림 3-8> 프랑스의 초광역권 .....	5
<그림 3-9> CIMA에 참여하는 두 레지옹과 DIACT .....	57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 연구의 배경

- 실용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광역경제권 중심의 신지역발전으로 전환됨에 따라 광역경제권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설치 규정을 둠(균특법 개정 제28조)
  - 2009년 10월 현재, 5+2 광역경제권별로 7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공식 출범됨
-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으로서, 5+2광역경제권별로 시도지사인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광역경제권의 추진기구가 아닌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사무지원기구의 성격을 띠
- 법이 의도하는 시도간 연계협력을 통한 광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예상
- 향후 광역경제권의 다양한 연계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및 산하 사무국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음

## 2.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 □ 연구범위 및 방법

- 7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및 산하 사무국의 구성 현황 및 실태 파악
- 7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공식출범이 대부분 10월에 이루어져, 운영 실태분석은 비교적 초기에 출범한 충청권을 사례로 분석하도록 함
- 국내외 사례 검토, 관련 법령 검토 등 주로 문헌연구에 의존하되, 충청권 위원회의 운영실태분석을 위해서는 관계자 심층면접, 관계 위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실태 파악

### □ 연구의 주요내용

-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법적 기능과 역할
-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운영 실태분석
- 해외의 지역간 파트너십 사례연구
-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 시도간 연계협력사업 추진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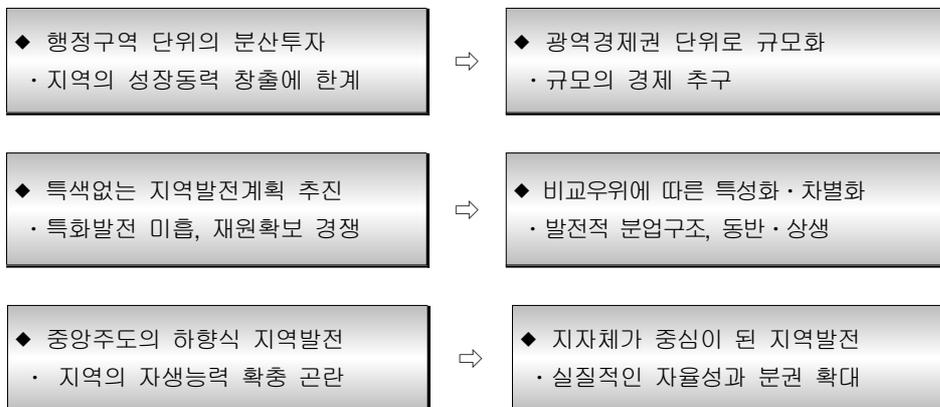
## II.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법적 기능 및 역할

### 1. 광역경제권 추진체계

#### □ 광역경제권 추진 경과

- 기존의 지역발전정책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형 지방화를 추진
  - 그러나 투자의 지리적 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의 산술적 균형에 치중
  -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만한 충분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이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부정적 효과를 낳음
  - 이에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위한 패러다임 변환을 모색

<그림 2-1> 지역발전전략의 패러다임 전환





- 인구규모, 산업연계성, 역사문화 동질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구 500만 내외의 5대 광역경제권과 인구 100만 정도의 2개 특별 광역 경제권을 설정함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2조 1항 및 별표1에서 5+2 광역경제권을 명시

<그림 2-3> 5+2 광역경제권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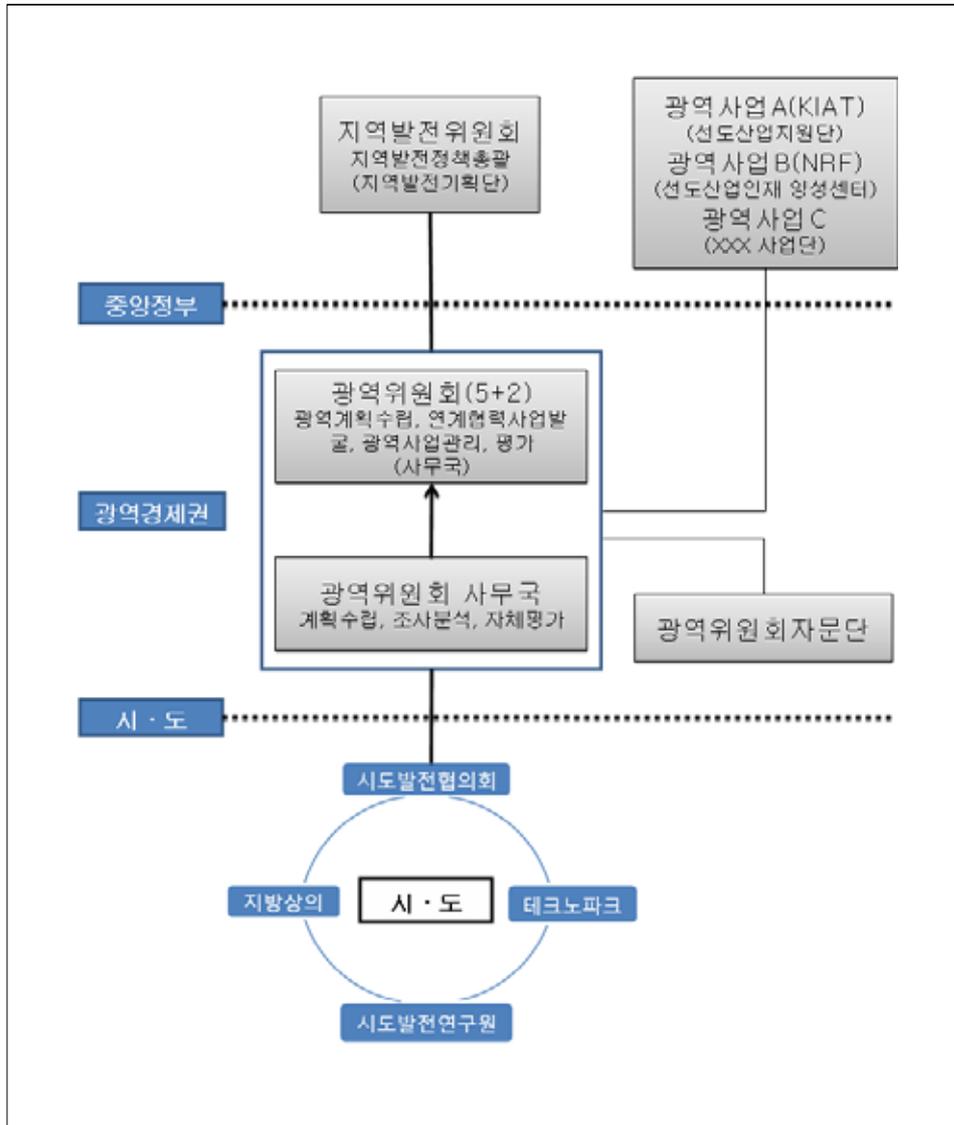
-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광역경제권추진팀’을 구성·운영
- 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공포·시행('09.4.22)
- 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공포·시행('09.5.29)

□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의 필요성 대두

-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에 맞는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광역경제권 사업의 성공적 추진 도모
- 광역경제권 중심으로의 지역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모범적 지역간 연계·협력 모델 제시

- 광역경제권 중심의 新 지역발전 거버넌스 체제 구축
- 상시 사무국 설치, 운영을 통해 관계 시도간의 지속적 업무 협조 체제 구축 및 내실 있는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운영 지원

<그림 2-4> 광역경제권발전사업 추진체계



□ 광역경제권 추진체계

- 지역발전위원회, 광역위원회, 광역사업 전담부처 등으로 구성
- 특히 광역위원회는 광역경제권 발전의 주체로서 광역경제권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시·도간 효율적 연계협력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 창출
- 광역위원회는 중요 정책에 대하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함

## 2.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의 구성과 역할

### 1)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법적 규정

□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의 의의 및 법정 기능

- 광역경제권은 단순히 몇 개의 행정단위를 묶는 개념이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정치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면서 하나의 자립적 경제단위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규모의 경제 및 네트워크 경제를 이루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는데 기본적 취지가 있음
-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및 계획 수립, 지자체간 광역연계사업의 발굴 등을 위한 추진기구로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이하 '광역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에서 주요기능을 규정하고 있음

균특법 주요내용(§28②)	운영준칙 주요내용(§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계획 및 광역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li> <li>○ 광역경제권내 시·도간 협력사업의 발굴에 관한 사항</li> <li>○ 광역경제권내 시·도 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자원의 분담에 관한 사항</li> <li>○ 해당 광역경제권 사업의 관리·평가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광역경제권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위원회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 및 정원 승인</li> <li>○ 광역위원회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li> <li>○ 광역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li> <li>○ 광역위원회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li> <li>○ 기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할 필요하다고 광역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li> </ul>

□ 광역위원회의 구성

- 법적 근거 : 군특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32조·제32조의2
- 구성 : 광역위원회(의결기구), 사무국(사무지원기구), 자문단(자문기구)
- 지역위에서는 운영준칙을 마련하고 시도는 운영준칙의 범위안에서 시도 자율적 합의에 의해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이하 “광역위원회”), 사무국, 자문단 구성
  - 광역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
- ※ 시행령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제주권 및 강원권은 단일권역임을 감안, 광역위원회 추진기구에 있어 특수성 인정
- 사무국은 현 정부의 ‘작은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필요 최소한의 조직·인력으로 발족
  - 사무총장은 광역경제권별 실정에 맞춰 지역발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을 계약직공무원 채용토록 제도적 장치 마련, 중립성 유지
  - 사무직원의 정원은 권역별 특성을 감안, 2그룹으로 구분, 최소인력 충원
    - \* A그룹(수도·충청·호남·동남, 대경), B그룹(강원·제주)
- 광역위원회, 사무국,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에서 기본적인 행·재정적 지원

## 2) 기구별 구성 및 기능

### □ 광역위원회의 구성

- 명칭 : ‘○○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준칙안 §2)
- 구성원칙 : 권역별로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법 §28③)
- 위원장 : 광역경제권에 속하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행(법 §28④)
  - 공동위원장은 광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공동의장이 됨(시행령 §32①)
  - \* 단일권역인 강원권과 제주권은 단독위원장으로 구성, 운영
- 위원(법 §28④)
  -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3명 이내의 자
  -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공동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시행령 §32④)

### □ 광역위원회 주요기능

- 광역경제권발전계획 및 광역 시행계획의 수립
  - 광역경제권 중심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은 광역경제권발전계획(5년 단위) 및 광역 시행계획(1년 단위)으로 추진됨
  - 본 계획은 광역경제권내 시·도간 종합적 계획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위원회가 수립 주체임
  - 그 동안 국토계획 등을 통해 광역권 단위의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중앙주도의 계획이었으며 본 광역계획은 관련 지자체간 최초의 공동 협력 계획임

- 이를 통해 기존 행정구역 범위를 초월한 광역경제권 단위에서 지역발전의 공동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의 토대를 제공하고,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 공유 및 협력 경험을 축적할 수 있음

○ 광역경제권내 시·도간 협력사업의 발굴 및 재원분담

- 광역경제권에서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도간 연계협력이 핵심임
- 산업분야, 인력양성, 과학기술, 발전거점, 교통물류, 문화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기존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연계협력이 요구됨
- 전략산업·선도산업간 연계, 산업내 스트림간 협력, 타산업간 융합 등 산업분야 연계를 통해 기술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
- 지역대학과 전략산업·선도산업을 연계하여 우수인력 지원체제 구축
- 광역경제권 발전거점을 육성하여 중추도시와 네트워크 도시간의 연계 강화 등
- 광역위원회는 자문단 등을 활용하여 시·도 간 연계협력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 기획 및 재원분담방안 수립

○ 광역경제권 사업의 관리·평가

- 광역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및 광역경제권 사업에 대한 평가
- 기존 시·도별로 수행하던 자체평가를 광역위원회가 광역단위로 실시하도록 변경됨
- 광역 시행계획에 대한 집행실적 모니터링, 추진실적 자체평가 실시
- 포괄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 자체평가 실시

- 전체적으로 볼 때, 광역 시행계획과 관련 사업들의 경우 지역 자체평가를 중시하고 있음

※ 자체평가 평가기준 : 사업기획 타당성, 사업집행 효율성, 사업목표 달성도 및 사업 성과

○ 광역경제권내 시도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재원의 분담에 관한 사항

#### □ 광역위원회 사무국

○ 사무국 의의 및 법정기능

- 광역위원회 업무성격상 시도간 이해관계의 상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시도간 이견을 조정하는 등 중립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실질적 사무조직을 설치하였으며, 주요 법정 기능은 아래와 같음

(시행령 §32조의2⑥)

- 광역위원회의 회의준비, 부의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무
- 광역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
- 그밖에 광역위원회의 각종 업무 지원에 관한 사무

○ 사무총장의 선임

- 광역위원장이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명(시행령 §32의2①)
- 광역위원회는 소속 부처가 없으므로 별도 정원 확보가 곤란함을 감안, 일반계약직이 아닌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
- 사무총장 선발시 광역위원회내 민간 전문가 및 시도 부시장·부지사를 포함한 5~7명으로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호선(준칙안 §7③④)

- ※ 「계약직 공무원규정」 제5조에 의하면 전문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등급, 기간, 채용자격, 공고계획 및 채용조건을 미리 정하여 행안부 장관과 협의 추진
  - 등급 및 연봉수준은 행안부 장관과 협의하여 전문계약직 “가”급수준으로 하고 연봉은 시도 부시장·부지사 급여 수준으로 책정
  -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되,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정함

○ 사무국 조직 구성 및 인력 충원

- 새 정부의 작은 정부 정책 기조를 감안하여, 필요 최소 조직 및 인력으로 사무국 발족
- 기획 및 총괄 기능과 조사·평가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계하되, 권역별 실정에 맞게 조직 설계 가능(준칙안 §10①)
  
- 광역위원회 운영규정에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근거 마련
- 광역위원회 사무국의 정원은 운영준칙의 범위내에서 광역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되, 권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2그룹으로 구분

※수도·충청·호남·동남·대경권 : 13명 이내, 강원·제주권 : 6명 이내(준칙안 §9②)

- 인력충원은 운영준칙이 정한 정원의 범위내에서 관계 공무원 및 연구원 파견, 자체 인력 채용 가능
- 공무원의 파견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파견 직급, 파견 받을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등을 행안부 및 관계 시도와 협의하여 별도 정원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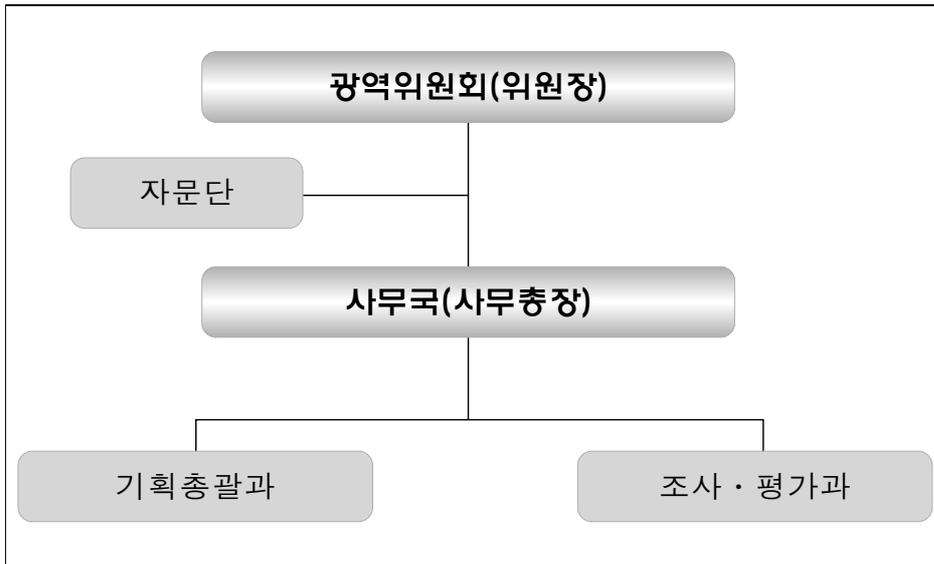
※ 파견공무원은 사무국 전체 정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음(시행령 §32의 2③)

○ 사무국 조직도 및 주요업무

- 사무국은 사무총장 1인과 사무직원으로 구성되며, 2개의 과(課)\* 이내로 구성함

\* 기획총괄과 및 조사·평가과(수도, 충청, 호남, 동남, 대경권), 광역경제과(강원, 제주권)

<그림 2-5> 사무국 조직도 예시



- 사무국의 업무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기획총괄과는 기획 및 행정지원 기능을 배치하며, 조사평가과는 연계협력 및 평가기능을 담당함

- 광역위원회의 회의준비, 부의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 광역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그밖에 광역위원회의 제반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예시] 사무국 주요업무

구분	기능	주요 업무	추진시기
기획 총괄과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경제권발전계획안 작성 및 수립</li> <li>○ 광역경제권발전 시행계획안 작성 및 수립</li> <li>○ 광역권내 경제동향·통계 조사 분석</li> <li>○ 광역권내 발전자원 조사 분석</li> <li>○ 시·도 연계협력사업 발굴(광역 시행계획 반영)</li> </ul>	5년단위 매년(12월~익년 2) 연중 (반기) 연중 연중
	행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위원회·자문단 운영 (회의통보, 수당지급, 안건배포, 회의록 작성 등)</li> <li>○ 인사·사무·예산회계·물품관리·감사 등에 관한 사항</li> <li>○ 각종 규정마련 등에 관한 사항</li> </ul>	연중 연중 연중
조사· 평가과	연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권내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지방중기청·지방상의·산단공·금융기관 등)</li> <li>○ 광역권사업 유관기관 협력채널 구축 운영 (선도프로젝트·선도산업·인력양성 유관기관)</li> <li>○ 광역경제권 세미나·포럼 등 개최</li> <li>○ 국제협력사업 (글로벌 광역권 협력사업)</li> <li>○ 대외 홍보</li> </ul>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연중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 시행계획 추진실적 자체평가·제출</li> <li>○ 광역권사업 예산신청 검토의견 작성·제출</li> <li>○ 광역경제권사업 평가·관리</li> </ul>	매년 1~2월 매년 5월 연중

□ 광역위원회 자문단

○ 자문단의 역할

- 광역위원회의 중요 정책결정 사안 자문
  - 권역별 Think Tank 기능 및 광역정책에 대한 권역 내 올바른 여론형성 유도
  - 광역위원회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
  - 시·도간 연계협력사업 발굴에 참여하여 자문 제공
  - 상시적 토론 및 간담회\*를 통한 정책대안 제시 등
- \* 주제 발표와 토론, 대안제시, 대안보완·수정
- 광역 시행계획 추진실적 자체평가 등 참여

○ 자문단 구성

- 광역경제권별 60인 이내로서, 분과위원회\*로 구성

※ 예시: 문화관광, 지역개발, R&D, 인력양성, 산업지원 등

- 대학교수, 각 연구기관의 연구원, 지역상공인, 시도 지역발전협의회 위원, 광역경제권 연구회 등 지역여론주도층 중심으로 구성
- 권역별 지역내 전문가 고루 안배
- 자문단 위원은 광역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상호 협의하여 위촉함

※ 광역경제권 자문단 활성화를 위해 광역경제권 연구회를 적극 활용



### Ⅲ. 국내의 유사 사례분석

#### 1. 국내 유사기구와 비교분석

##### 1) 행정협의회

###### □ 행정협의회의 의의

###### ○ 지방자치법 제 152조에 규정

-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음

###### ○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율을 요청할 수 있음

###### ○ 행정협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주체로서 다양한 광역사무를 자발적으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 행정협의회의 운영절차

###### ○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율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운영상의 절차가 매우 중요함

- 회의원영은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음

-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도록 되어 있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시회의에 대해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 이 경우 시·도지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권고할 수 있고,
  - 시·군·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개최를 권고하도록 하였음
- 행정협의회를 통한 협의 사항은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5조’에 따라서
  -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 도로, 지하철, 교량, 항공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
  -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폐지
  -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행정협의회의 현황 (행정안전부, 2008)

- 2007년 말 현재 광역행정협의회는 7개 권역에 구성되어 있고, 광역행정협의회에서 2007년 15건의 안건(15건 합의)이 협의되었음
- 기초행정협의회는 53개가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 54건의 안건(합의 38건, 계속 검토 16건)을 협의하였음

- 기능별 행정협의회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하여 47개가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 331건의 안건(합의 291건, 계속검토 35건, 미합의 5건)을 협의하였음
- 안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 158건, 도로교통 37건, 물관리 48건, 지역개발 75건등이 있음

#### □ 행정협의회의 문제점

- 행정협의회는 비상설기구일 뿐만 아니라,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집행력이 부족함
- 또한 행정협의회의 합의사항이나 결정에 대한 구속력이 미흡하여 협력의 실효성이 떨어짐
- 행정협의회는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의 결합이지만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이로 인해 결정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 합의사항 미이행시 이행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임

## 2) 지방자치단체조합

####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의의

- 지방자치법 제 152조에 규정
  -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 시·도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시·군·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

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 규약에 따라 선임함
-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주요 사무를 심의, 의결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에는 사무의 내용을 비롯한 조직구성과 재정운영, 그리고 운영에 관한 규칙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
- 시·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따르며, 시·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적으로 시·도지사의 , 2차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함

####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특성

- 처리유형적 측면에서 이원적 통합
  -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은 인정하면서 광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방식
  - 연합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광역특별구, 지방개발공사 등이 여기에 해당함
  - 따라서 두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는 방식에 비해 권한의 집중을 피할 수 있으며, 또한 부분적인 통합에 비해서는 업무수행 효율성이 높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보통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치권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동일지역을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결과를 초래하나, 양자가 각각 기능과 구역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상호보완적 관계라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또 다른 특성은 처리사무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라는 점임

-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보통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는 당해 보통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 중 일부사무로 국한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실제로는 자치사무 또는 위임사무의 구분을 불문함
- 이처럼 사무의 종류뿐만 아니라 사무의 성격에 있어서도 쓰레기수거 및 처리에서 학교, 공원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처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처리사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함 (금창호, 2004)

####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기능

○ 지방자치단체가 갖게 되는 공간적 한계를 기능을 중심으로 보완함

- 특정한 행정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넘어서서 처리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필요함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변경하지 않고 특정 행정서비스에 대처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서비스구역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가능성이 있음

○ 대규모 투자재원과 전문적 기술이 동원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가 요청되는데, 이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안임

-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지역의 주민들에

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 대대적인 법률의 수정 없이도 가능한 광역행정 기법이라는 장점이 있음

####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현황

-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2008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0여 개가 설치되었음
- 이 중에서 2000년에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이 '수도권매립지운영공사'로 전환되었고,
- '지방자치정보화조합'은 2008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되어 2008년 현재 8개의 지방자치 단체조합이 운영되고 있음 (행정안전부, 2008)

####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독립적인 법인의 지위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으며, 독립적인 의결기관의 성격인 조합회의를 갖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조합구성에 있어 선출직인 지방의회 의원 중심이 아닌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등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조합의 설립·조직·운영에 관한 법적 규정의 미비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있음
- 행정안전부 장관의 조합 승인권이 지나치게 강력하여 감독권으로 조합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김길수, 2008)

### 3) 종합검토

#### □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형태상 특성

- 이수장(1993), Lefebvre(2004)는 광역행정제도를 크게 세 유형으로 구분함
  - 통합적 방법으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단일 정부로 통합하여 광역 사무를 처리하는 방식
  - 기존의 정치 행정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간 협이나 기능이양을 통해 광역사무를 처리하는 방식
  - 앞서 언급했듯이 이원적 방법으로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은 인정하면서 광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방식
- Dungey and Newman(1999)은 광역경제권 추진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 지방정부간 공동협약에 따라 설립
  - 적절한 광역정부가 직접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중앙정부에 의한 권역별 추진방식
- 부산·울산·경남발전연구원(2008)
  - 연계협력형 : 지방정부간 광역행정협의회
  - 통합형 : 지방정부간 통합을 통한 광역행정정부 구성
  - 기능이전형 : 광역경제권 계획 및 경제협력기구 구성
- 이상의 논의를 놓고 볼 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다음의 형태상 특성을 가짐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이 인정되면서 별도의 광역행정기구 설치
  - 중앙정부에 의한 권역별 추진방식

- 기능 이전형 : 광역경제권 계획 및 경제협력기구 구성
-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지만, 중앙정부에 의해 권역별로 추진되는 기능 이전형의 광역행정기구로 볼 수 있음

## 2. 해외의 지역간 협력사업 추진기구 사례분석

### 1) 분석 개요

#### □ 사례선정의 근거

- 해외의 광역경제권 행정체계와 운영사례를 분석하는 목적은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선진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조직적 틀과 지원방식을 확인하고, 그 적용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음
- 특히 현재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형태와 유사한 사례와 유사한 해외 사례를 발굴하여, 그 운영체계와 시사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형태를 중심으로 사례를 발굴 분석함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이 인정되면서 별도의 광역행정기구 설치
  - 중앙정부에 의한 권역별 추진방식
  - 기능 이전형 : 광역경제권 계획 및 경제협력기구 구성
  - 한 국가 내에서의 광역경제권을 지원하는 행정체계를 위주로 하되, 향후 해안벨트 초광역경제권과 해외 광역경제권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월경적 경제권역에 관한 경우도 추가하여 조사함

## □ 주요 사례

- 영국의 광역적 지역정책시스템
  - 다지역협약(MAA : Multi-Area Agreement)
  - Local Authority Leaders' Board(LALB)
  
- 일본의 광역지방계획권역
  - 광역지방계획협의회
  - 광역연합
  
- 프랑스의 광역행정체계
  - 국가-레지옹 간 계획계약
  - 산악지역 간 협약
  - 국토개발 및 계획을 위한 지역협의회(CRADT : Conférence Régionale d'Aménagement et de Développement du Territoire)

## 2) 영국의 광역적 지역협력시스템

### □ 영국 광역개발체계 개요

- 영국의 광역권(Regions) 형성의 모태는 지속적인 지역불균형에 직면한 보수당 정부가 1994년에 설립한 지역청(Government Offices of the Regions, GOR)임
  - GOR은 Eastern, East Midlands, London, North East, North West, South East, South West, Yorkshire and Humberside, West Midlands

등의 9개로 구분된 광역권에 설치

- 그러나 이 당시 GOR은 소규모 예산을가지고 중앙정부의 지역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부처 연합 지역사무소에 불과했음
-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중앙집권적 정책으로 인해 지방분권적 정책이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 GOR의 설립은 지역밀착형 지역정책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의의가 있었음
- 1997년에 집권한 신노동당정부는 런던광역시(Greater London Authority)를 포함하여 잉글랜드를 9개의 광역권으로 구분함
- 신노동당정부는 지속적인 지역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잠재력을 지역 스스로가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지역의 경쟁력 개선이 영국 전체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한다고 강조함

#### □ 영국 광역경제권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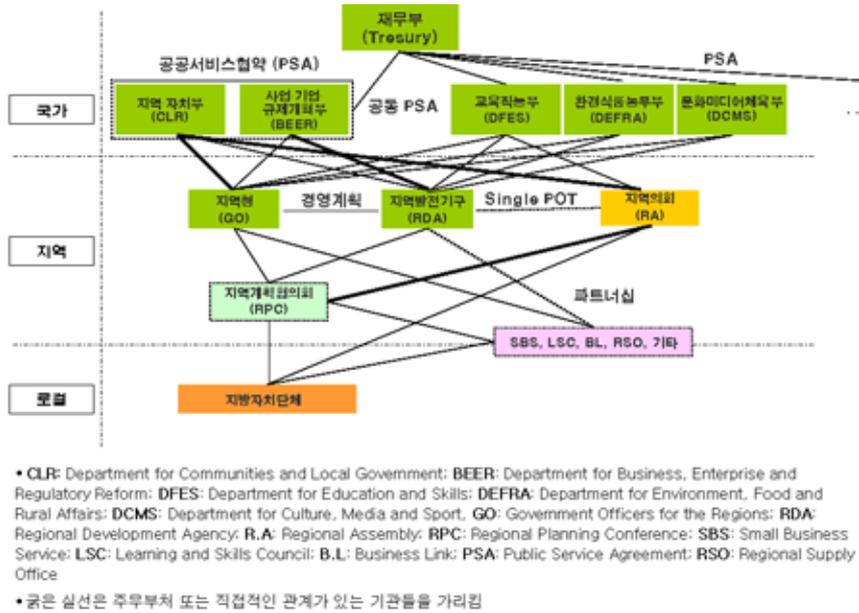
- 영국은 약 70여 년 전부터 시행되어온 정책인 정부기관의 지방분산정책을 공공정책의 근간으로 했음
- 1998년 지역개발청법(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Act)이 제정되면서 1999년 4월 1일에 8개의 지역이 공식적으로 출범
  - 런던 RDA가 마지막으로 런던청(Greater London Authority, GLA)으로 2000년 6월에 만들어짐
- 영국의 광역경제권 운영체계의 핵심기구는 지역청(GOR : Government Offices for the Regions), 지역개발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RDA), 지역의회(Regional Assembly, RA)
- 하지만 영국의 광역계획체계에서는 각 하위 지방행정 단위의 갈등을 중재할 선출직 지방정부가 부재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RDA는 하위 지방정부 대표들, 기업대표, 노조 등과 비공식적 파트너십을 맺어왔음
- 이 중에서도 특별히 GOR과의 연계가 중요함. 이는 중앙정부정책들을 지역수준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단체가 GOR이기 때문. 또한 RA와의 연계도 중요한데, 이 연계는 주로 RA가 Regional housing and Spatial Strategies를 주도하고, 지역경제전략(Regional Economic Strategy)을 조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임

○ RDA와 GOR (Pearce and Ayres, 2009)

- RDA 기본적으로 단층구조의 지방자치 체계를 가지고 있던 영국에서 광역적인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 1994년에 설치한 지역 행정기구영국의 광역권 형성의 모태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의 광역권과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한국은 광역권 이전에도 2계층제의 지방자치체계를 가지고 있음)
- 지역청 설립이 본격화된 것은 1997년 노동당 정권 수립이후인데, 당시 잉글랜드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RDA(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법을 제정하고 잉글랜드 9개 광역권을 구분이 각 권역에 지역사무소가 설치됨9개 권역별 RDA는 1999년 이후에 수립됨
- 영국의 지방정부는 지역경제와 관련된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않음
- GO를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역관련 정책의 원활한 조정과 통합을 위해 마련한 기구가 CLR(지역자치부) 산하의 RCU(Regional Coordination Unit)인 GOR는 RDA와 함께 지역개발의 여러 이슈를 담당함
- GOR은 중앙정부의 대표로서 이중적인 기능을 수행함 1) 해당 지역에 대해 비판적 파트너로서, 2) 지방정부의 지역개발전략을 검토하고 모니터링하는 준사법기구 (quasi judicial function)로서 역할을 수행함

<그림 3-1> 영국의 지역계획 체계



<표 3-1> 영국의 광역경제권 현황

구분	면적(km <sup>2</sup> )	인구(천명)	인구밀도 (명/km <sup>2</sup> )	총부가가치 (백만파운드)	1인당부가가치 (파운드)
NorthEast	8,573	2,556	298	38,788	15,177
NorthWest	14,106	6,853	486	111,252	16,234
YorkshireandThe Humber	15,408	5,142	334	82,116	15,968
EastMidlands	15,607	4,364	280	74,113	16,982
WestMidlands	12,998	5,367	413	88,997	16,583
East	19,109	5,607	293	98,967	17,652
London	1,572	7,512	4779	217,549	28,959
SouthEast	19,069	8,238	432	167,356	20,316
SouthWest	23,837	5,124	215	89,501	17,467
잉글랜드	130,279	50,763	390	968,639	-
영국전체	242,513	60,587	250	1,154,959	19,063

자료: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영국)

- 지역협의체(Regional Chamber)와 지역의회(Regional Assembly)는 각 지역에서 결성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구성인원이 다름
  - 지역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내 민간 부문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자발적 협의체로, 지역내 경제, 사회 관련 문제를 협의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함
- 지역협의체의 주요 역할은 우리나라 균형발전특별법 상의 구 지역혁신협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여, RDA가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 특성과 이해를 반영하도록 조언,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
- 그러나 2003년 이후 영국 지역협의체의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 지역계획기구(Regional Planning Conference)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지역계획 수립기능이 추가됨
- 한편, 지역의회(Regional Assembly)는 지방정부 대표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협의체와 마찬가지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조정, 심의를 수행하나, 중앙 단위에서 추진하는 RDA와는 별개로 진행됨

#### □ 다지역협약 (MAA : Multi-Area Agreement)

- MAA의 배경
  - MAA가 처음 거론된 것은 Local Government White Paper (October 2006)에서인데, 여기서 경쟁력있는 도시와 지역들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됨
  - 도시 지역들 대부분이 다수의 지방정부를 포괄하고 있고, 지방의 전략적 파트너는 이미 관할 구역을 넘어 네트워킹 되고 있음
  - 이러한 배경 하에서 MAA는 지역수준에서 관할구역을 넘어 형성되는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

- MAA는 둘 혹은 그 이상의 지방정부가 계층제 상의 지위에 무관하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 위해 맺는 협약으로서 DCLG(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가 담당함
- MAA의 목적
  - MAA는 지방정부의 관할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실제 경제지리를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경쟁환경에서 보다 전략적이고 정돈된 대응을 취하도록 함
  - MAA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 간 자발적 협약의 형태를 취하지만 DCLG가 이를 담당토록 하여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보완함
  - 몇몇 정책대상 영역은 관할 정부 간 협력이 필수적인데, 특히 교통, 토지이용계획, 실업대책, 자본투자, 기반시설 공급 등의 문제는 중요한 이슈임
  - 때로는 상당히 많은 수의 지방 당국 간 협력이 문제 해결에 보다 적실하고 효율적인 경우가 있음
- 2009년 12월 현재 체결되어 운영중인 MAA(12개 지역)

-  Tyne and Wear (Forum member)
-  Tees Valley (Forum member)
-  Pennine Lancashire (Forum Member)
-  Leeds City Region (Forum member)
-  Greater Manchester MAA
-  Liverpool City Region
-  South Yorkshire

 Leicester and Leicestershire

 PUSH (Partnership for Urban South Hampshire)

 Bournemouth, Dorset and Poole MAA

 Birmingham, Coventry and Black Country City Region

 North Kent

○ 협약체결 예정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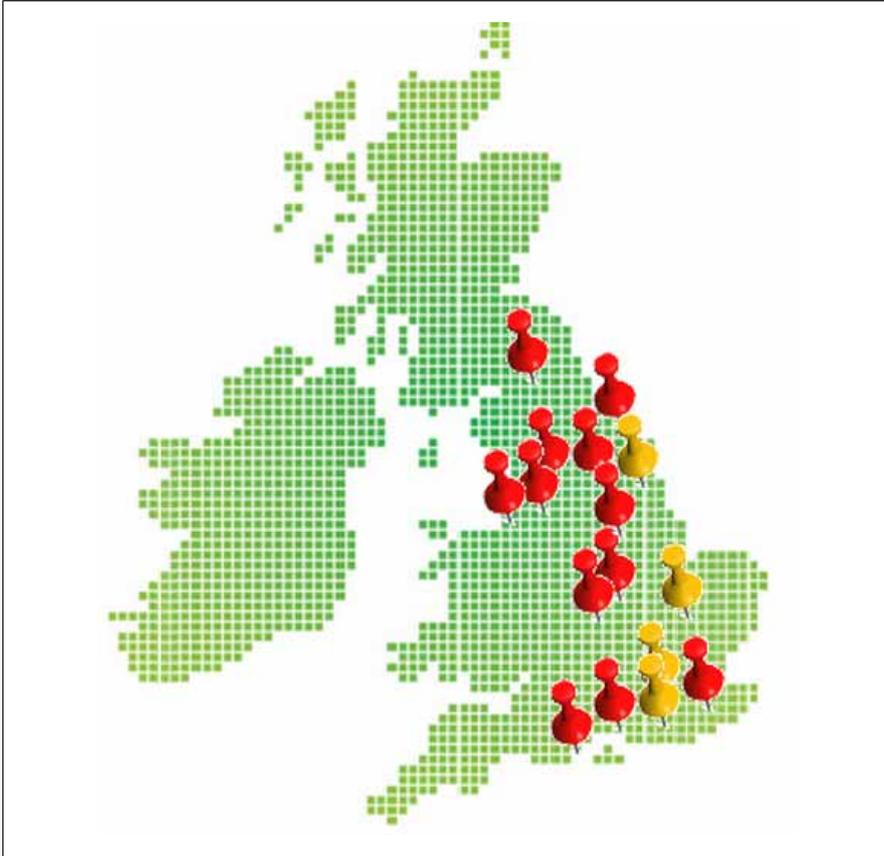
 Regional Cities East

 Hull and Humber

 Gatwick Diamond

 Olympic Boroughs

<그림 3-1> 영국의 MAA 현황



출처 : <http://www.maaforum.org.uk/>

○ MAA가 다루는 이슈들

- 기술(인재) 부족, 주택시장 불균형, 교통 및 기반시설 사업, 경제개발
- MAAs는 기존의 LAA(Local Area Agreement)과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프레임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지역개발전략을 보완하는 역할을 함
- 기존의 지역 내 파트너십이 지역개발에 충분하다면 MAA는 불필요함

- MAA는 경계를 넘나드는 파트너들이 정부와 대상지와 재정지원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LAA와 유사하지만, MAA는 재정을 마련하는 것 보다 지출을 조정하는 데에 주안점을 둠
- MAA가 구성되기 위한 조건들
  - 탄탄한 거버넌스 구조
  - 정치적 리더십
  - 능률적이고 간소한 집행과 재정 프레임
  - 각각의 MAA는 지역화되어 야하고, 지역 환경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광역행정체계로서 MAA의 강점
  - 국지적인 해법을 찾기 어려운 전략적 사업을 추진할 때 하위지역들 모두의 사업추진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음
  - 민간의 자본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보다 큰 규모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음
  - 사업추진의 유연성과 강한 파트너십 형성
- 광역행정체계로서 MAA가 해결해야 할 과제
  - 인접한 지방 의회들 간의 의견 조율
  - 지역 조직들, 지방당국, 파트너들 간의 갈등과 분쟁
  - 민주적 책임성으로 표현되는 정치적 차원
  - 전략적 결정에 비선출직 대표가 가지는 한계
  - 지역의 기관들을 포함해 모든 참여주체들의 헌신과 책임감
  - 지나친 관료적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
  - GOR과의 관계 조정 문제

- MMA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할 제도적 인센티브의 문제

○ MAA성공을 위한 조건들

- 해당 지역에 닥친 구체적인 과제들에 적합해야 함
- MAA가 관할하게 될 지역을 묶어 낼 공유된 관점
- 지역사회 역량과 탄탄한 파트너십 관계
-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함

□ Local Authority Leaders' Board(LALB)

○ LALB는 지역계획 수립기구로서 1998년에 설립된 지역의회(Regional Assemblies)를 대체하고 있는 기구임

- LALB의 설립은 2007년 작성된 영국정부의 보고서 Review of Sub-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Regeneration에서 제시한 계획으로 잉글랜드의 지역 거버넌스 구조개편을 목적으로 함
- 영국 정부는 2008년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정책방향이 담긴 Prosperous Places: taking forward the review of sub-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regeneration 을 발간하고 RDA와 LALB를 중심으로 지역의 Single Regional Strategy를 수립하도록 방향을 제시함

○ 지역의회의 폐지

- 2007년 보고서에서 정부개편의 방향에 따라 잉글랜드의 지역 거버넌스 구조에서 지역의회 폐지가 제시됨
- 이 보고서에는 "지역 의회가 현재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RDA가 2010년까지 통합지역전략(single regional

strategy)를 전담할 것이라 말하고 있음

- 향후 지역적 개발체계의 중심은 RDA와 LALB으로 설정하고 있음

○ 현재 LALB 현황

- East of England Regional Strategy Board
- East Midlands Local Authorities Leaders Board
- Association of North East Councils
- 4NW - The North West Regional Leaders Board
- South East England Partnership Board
- South West Strategic Leaders' Board
- Local Government Yorkshire and Humber

<그림 3-2> 잉글랜드의 LALB 대상 지역



○ LALB의 구조와 기능

- 지역의회가 폐지되면서 향후 통합지역전략 (Single Regional Strategy) 을 수립하는 핵심기관은 RDA와 LALB로 압축됨
- 중앙정부는 위원회에 관한 단일한 구조를 제시하지 않고, 각 지역에서 그 지역 상황에 맞게 구성함

- 그러나 중앙정부는 각 지역의 LALB가 관리가능한 틀을 가지도록 관리하고, 장기적인 전략적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며, 각 지역의 RDA에 효과적으로 결합하도록 함
- LALB는 전 지역의 지방당국 대표들을 포괄하며, 여기에는 핵심적인 하위 지역단위의 대표자는 물론 차 상위의 지역대표자도 포함할 수 있으며, 대표자들의 정치적 균형을 고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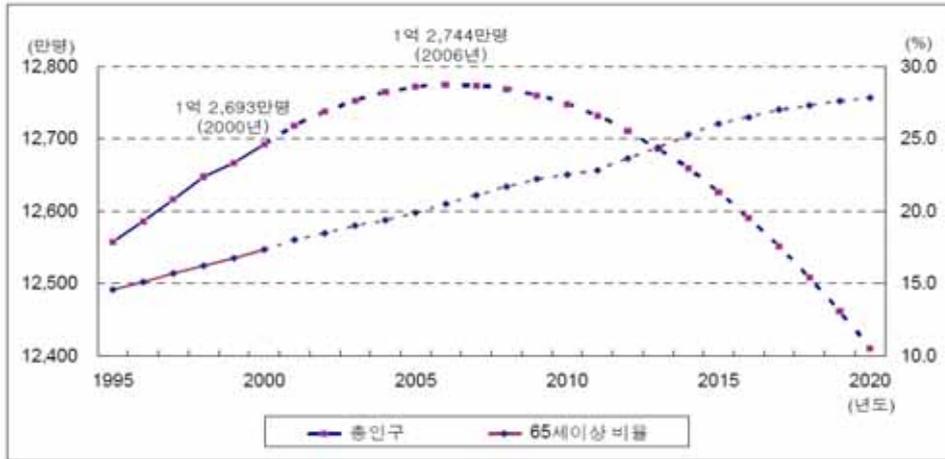
### 3) 일본의 광역지방계획권역

#### □ 체계 개편의 배경

##### ○ 개발중심 계획으로부터 탈피

- 1962년 이래 5회에 걸쳐 수립·추진되어 온 「국토총합개발계획」은 일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거대한 공헌을 해왔음
- 이 계획들은 모두 성장지상주의에 바탕을 둔 「개발계획」이었으며, 1998년에 수립된 제5차 국토총합개발계획에서는 지역의 자립기반 확충과 국토환경의 보전을 가장 큰 목표로 설정하였지만, 이 역시 「개발」이라는 큰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함
- 더욱이 거품경제의 붕괴 및 저성장시대 도래, 인구감소시대의 출현,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계획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음

<그림 3-3> 일본의 인구 및 고령화율 전망



출처 : 「국토정책 Brief」 제 93호

○ 지방의 중요성 대두

- 지금까지는 모든 정책들이 국가주도로 수립되고 추진되어 왔지만, 장래는 지방이 중심되어 세계 각국의 지방과 경쟁하는 다원화 경쟁시대가 될 것임
- 따라서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직결되므로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이 주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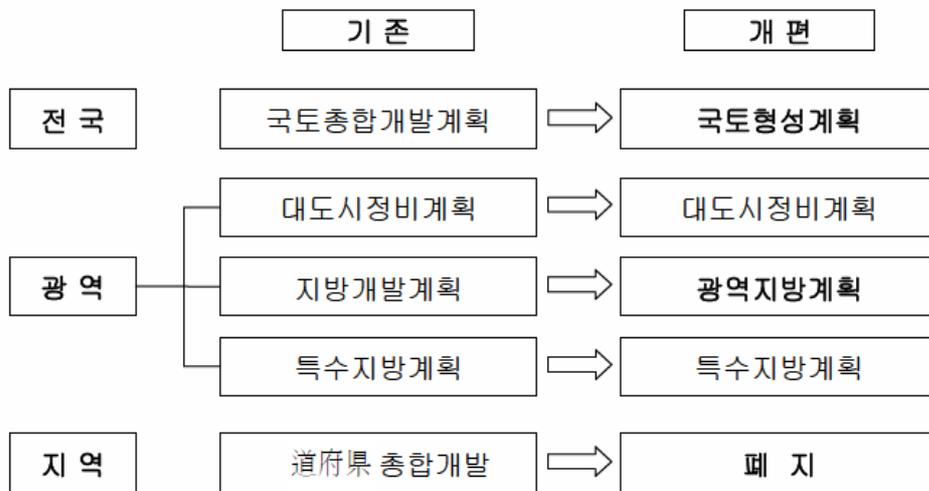
○ 국토관리의 새로운 인식

- 세계 6위의 EEZ(Exclusive Economics Zone, 배타적 경제수역)를 갖고 있는 해양국가로서, 수산자원·해저천연자원 등의 보전과 이용에 관하여 국토계획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 태풍, 지진 등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재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체계, 긴급수송로의 확보 등 국가차원에서의 인적·물적 시스템 정비가 필요함

□ 체계 개편의 내용

- 종합적인 국토형성을 위하여 기존 「국토종합개발계획」을 「국토형성계획」으로 명칭변경하고 계획내용을 보완
-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道府県종합개발계획」, 「특정지역종합개발계획」 등은 폐지하고 「광역지방계획」 제도를 신설
- 「국토이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 관련계획을 조정

<그림 3-4> 일본 국토계획체계의 개편 방향



□ 전국계획 (국토형성계획)

- 기본이념
  - 지역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국토기반을 형성
  -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인 활동을 존중

○ 계획의 내용

- 토지, 수자원 기타 국토자원의 이용 및 보전
- 해역의 이용 및 보전 (※신설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지진, 재해, 수해, 풍해 기타 재해에 대한 방재 및 경감
- 도시 및 농산어촌의 규모와 배치의 조정 및 정비
- 산업의 적정한 입지
- 교통시설, 정보통신시설, 과학기술 관련 연구시설, 기타 중요한 공공시설의 이용, 정비 및 보전 (※신설 : 기존 시설의 유효 이용과 적절한 유지 관리) 문화, 후생 및 관광 관련 자원의 보호 및 시설 이용 및 정비
- 국토의 양호한 환경 창출 등 환경의 보전 및 양호한 경관의 형성 (※신설 : 국토의 질적 향상의 추진)

○ 계획의 수립절차

- 국토교통대신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도부현(都道府県)·정령시(政令市)의 의견을 청취
- 국토심의회는 조사·심의를 거쳐, 계획의 안을 작성한 후, 각의에서 결정

○ 계획의 평가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책평가법에 근거하여 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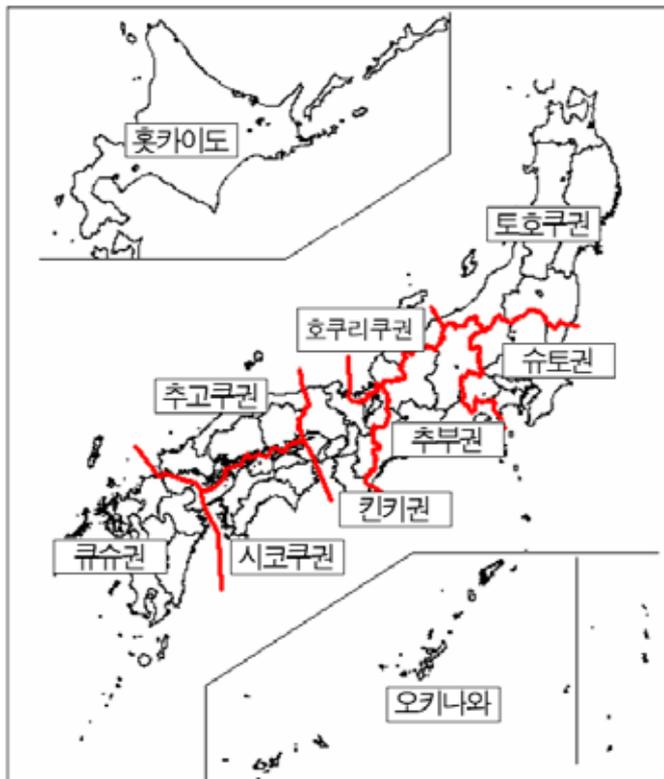
○ 전국계획에 대한 제안 제도 : 도도부현(都道府県)·정령시(政令市)는 독자적으로 전국계획 또는 변경계획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안할 수 있음

□ 광역계획

○ 계획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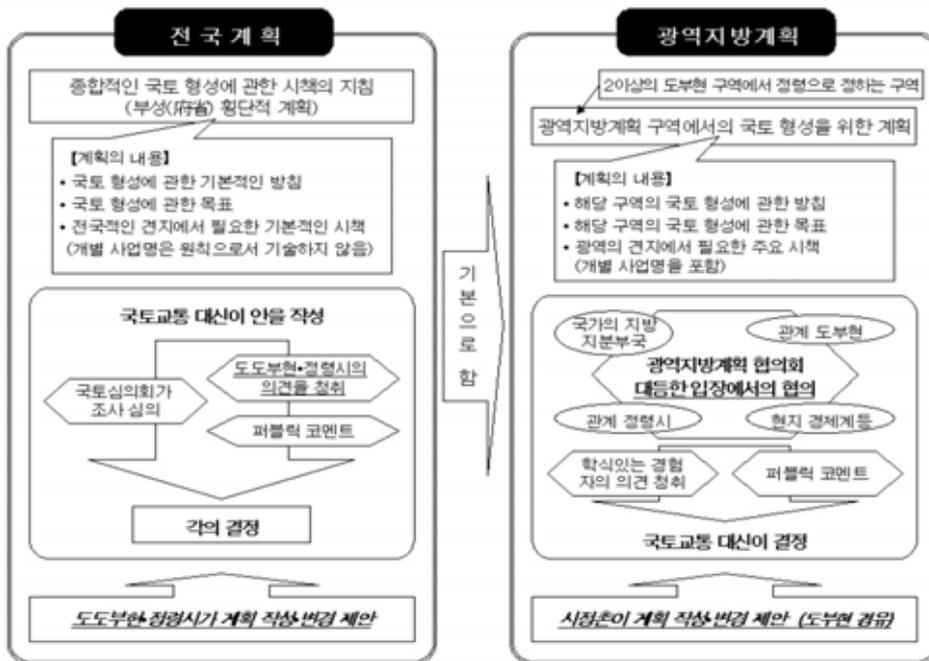
- 首都圏, 近畿圏, 中部圏 등 각각의 개별법에 의한 대도시정비계획은 존치하되 사업계획은 폐지
- 東北, 九州지방 등 5개 지방총합개발계획제도를 폐지하고, 둘 이상의道府県으로서 필요한 구역을 설정하여 「광역지방계획」을 수립토록 함 (首都圏, 近畿圏, 中部圏을 포함하여 전국에 약 10개 권역 설정)
- 沖繩, 北海道 등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지역계획은 존치

<그림 3-5> 일본의 광역지방계획 대상권역



- 광역지방계획의 내용 : 방침설정, 목표제시, 광역차원에서 필요한 주요 시책·계획 등의 수립
- 국토교통대신은 국민 의견의 반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광역지방계획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계획 작성
- 광역지방계획협의회
  - 광역지방계획의 수립 및 실시를 위해 광역지방계획권역별로 중앙정부의 지방기구, 관계 道府縣·政令市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설치
  - 협의회에는 구역내 市町村, 구역에 인접하는 지방공공단체, 지역 경제인 등도 참여 가능

<그림 3-6> 전국계획과 광역지방계획의 관계



자료 : 國土交通省 홈페이지 [www.mlit.go.jp](http://www.mlit.go.jp)

○ 광역지방계획협의회의 구성

- 국토형성계획법 시행령에서는 광역지방계획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구역내 도부현과 지정도시, 그리고 다음에 열거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 당해 광역지방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 i) 관구경찰국 ii) 종합통신국. iii) 재무국. iv) 지방후생국. v) 지방농정국. vi) 삼림관리국. vii) 경제산업국. viii) 지방정비국. ix) 지방운수국. x) 관구해상보안본부. xi) 지방환경사무소
-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광역지방계획구역내 시정촌, 당해 지방계획구역과 인접한 지방공공단체 기타 광역지방계획의 실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를 협의회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계획

- 지금까지 제도로서만 존재하고 계획수립 및 시행실적이 전무한 道府県 종합 개발계획은 폐지하고 광역지방계획이 이를 흡수
- 반도진흥계획, 산촌진흥계획, 도시진흥계획 등 개별법에 의한 각종 진흥계획은 존치

□ 광역연합(廣域連合): 결합도가 높고 광범위한 유형 (강도 높은 협력관계)

○ 광역연합의 의의 및 목적

- 광역연합은 1995년 6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서 지역의 다양한 광역적 요구(needs)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권한을 이양받는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도입됨
- 광역연합은 都道府縣, 市村町, 特別區가 설치할 수 있으며, 이들의 사

무중에서 광역에 걸쳐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관해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광역행정을 추진하고 있음

○ 광역연합의 성격

- 광역연합은 형식상으로는 일부사무조합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상의 특별지방공공단체중 지방공공단체의 조합에 속하기는 하지만,
- 광역연합에서는 종래 조직에는 없던 새로운 방식이 설치되고 새로운 기능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에서 종래 일부사무조합 성격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됨
- 즉, 일부사무조합은 사무의 공동처리방식의 한 형태로 구성 자치단체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데 그치는 반면에 광역연합은 구성원으로서 주민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 협력관계를 조직하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해서 일정한 권고를 할 수 있고,
- 나아가서는 국가 등으로부터 권한이나 사무의 수입을 할 수 있음

○ 광역연합 설치 현황

- 1996년 4월 1일 일본 최초로 오이타(大分)현에 「다이노(大野) 광역연합」이 설립된 이후,
- 2000년 4월 1일 현재 전체 총 47개 都道府縣중 27개 道府縣에서 65개의 광역연합이 발족되었으며,
- 이에 참여하고 있는 시정촌(지정도시, 특별구 포함)은 모두 3,252개에 달함
- 광역연합의 설립추세를 보면 1996년도에는 4개에 불과하였던 것이 해마다 증가하여 1998년도에는 10개 권역에서 12개, 1999년도에는 39개가 설립되었으며, 2000년 4월 1일에도 4개의 광역연합이 신설됨

<표 3-2> 연도별 광역연합 설치상황 (2000년 4월 1일 현재)

설립연도	광역연합 수	비율(%)
1996	4	6.2
1997	6	9.2
1998	12	18.5
1999	39	60.0
2000	4	6.2
계	65	100.0

\* 주: 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자료: 일본 自治省 홈페이지(<http://www.mha.go.jp>)

- 동일한 지역내에서 다수의 광역연합이 결성되는 사례도 발견되는데,
-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미에현에는 10개, 나가노현에는 9개, 기후현에는 7개의 많은 종류의 광역연합이 설립되어 있음

<표 3-3> 일본의 광역연합 설치상황 (2000년 4월 1일 현재)

	광역자치단체 (도도부현)	지정도시	시	특별구	정	촌	계	설치수	참여율
1	홋카이도	1	33	0	154	24	212	3	8.5%
2	아오모리현	0	8	0	34	25	67	2	41.8%
3	이와테현	0	13	0	30	16	59	2	11.9%
4	미야기현	1	9	0	59	2	71	0	0.0%
5	아키타현	0	9	0	50	10	69	0	0.0%
6	야마가타현	0	13	0	27	4	44	0	0.0%
7	후쿠지마현	0	10	0	52	28	90	0	0.0%
8	이바라키현	0	20	0	48	17	85	0	0.0%
9	토치기현	0	12	0	35	2	49	0	0.0%
10	군마현	0	11	0	33	26	70	0	0.0%
11	사이타마현	0	43	0	38	11	92	1	100.0%
12	지바현	1	30	0	44	5	80	0	0.0%
13	토쿄도	0	27	23	5	8	63	0	0.0%
14	가나가와현	2	17	0	17	1	37	0	0.0%

	광역자치단체 (도도부현)	지정도시	시	특별구	정	촌	계	설치수	참여율
15	니이가타현	0	20	0	57	35	112	0	0.0%
16	토야마현	0	9	0	18	8	35	1	11.4%
17	이시카와현	0	8	0	27	6	41	1	14.6%
18	후쿠이현	0	7	0	22	6	35	1	17.1%
19	야마나시현	0	7	0	37	20	64	1	10.9%
20	나가노현	0	17	0	36	67	120	9	93.3%
21	기후현	0	14	0	55	30	99	7	46.5%
22	시즈오카현	0	21	0	49	4	74	0	0.0%
23	아이치현	1	30	0	47	10	88	1	4.5%
24	미에현	0	13	0	47	9	69	10	82.6%
25	시가현	0	7	0	42	1	50	1	12.0%
26	교토부	1	11	0	31	1	44	0	0.0%
27	오사카부	1	32	0	10	1	44	1	6.8%
28	효고현	1	21	0	66	0	88	0	0.0%
29	나라현	0	10	0	20	17	47	2	44.7%
30	와카야마현	0	7	0	36	7	50	0	0.0%
31	돗토리현	0	4	0	31	4	39	2	35.9%
32	시마네현	0	8	0	41	10	59	2	28.8%
33	오카야마현	0	10	0	56	12	78	1	11.5%
34	히로시마현	1	12	0	67	6	86	1	0.0%
35	야마구치현	0	14	0	37	5	56	0	0.0%
36	도쿠지마현	0	4	0	38	8	50	2	26.0%
37	카가와현	0	5	0	38	0	43	0	0.0%
38	에히메현	0	12	0	44	14	70	0	0.0%
39	고우치현	0	9	0	25	19	53	0	0.0%
40	후쿠오카현	2	22	0	65	8	97	1	94.8%
41	사가현	0	7	0	37	5	49	1	36.7%
42	나가사키현	0	8	0	70	1	79	2	19.0%
43	구마모토현	0	11	0	62	21	94	4	61.7%
44	오이타현	0	11	0	36	11	58	4	0.0%
45	미야기현	0	9	0	28	7	44	0	0.0%
46	가고시마현	0	14	0	73	9	96	2	9.4%
47	오кина와현	0	10	0	16	27	53	0	0.0%
계	12	659	23	1990	568	3252	65		

\* 자료: 일본 自治省 홈페이지(<http://www.mha.go.jp>)

○ 광역연합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 혹은 현으로부터 '직접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는 것임

- 일본에서 최초로 현지사로부터 사무위임이 이루어진 사례는 1998년 4월1일에 설립된 「돗토리(鳥取) 중부 내고장(ふるさと) 광역연합」에서 시작되었는데,
- 구체적으로는 화약류에 대한 소비 등에 관한 허가사무 및 액화천연가스 설비공사의 허가에 관한 사무가 위임된 바 있음
- 그 후 이와 같은 사무가 나가노(長野)현의 세 개 광역연합(上田,, 松本, 木曾 광역연합)에도 위임됨
- 나가노현의 「내고장(ふるさと)시정촌권」은 고향의 창생과 다극분산형 국토의 형성을 촉진하여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된 광역연합으로,
- 나가노현내의 각 권역별 대표적인 사업의 예를 들면 松本광역시정촌권은 '내고향 탐방', 木曾광역시정촌권은 '문화공원사업', 上田광역시정촌권은 '자원봉사자 육성' 등에 주력하고 있음

○ 광역연합에 대한 재정지원

- 일본 정부는 광역연합의 자발적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광역연합의 설치와 관련하여 1구성 단체당 700만엔의 特別交付稅를 지원하고,
- 광역계획에 기초하여 고도의 광역적 조정을 거쳐 실시하는 공공시설의 정비사업에 대한 地域綜合整備事業債(특별분)의 충당율을 통상 75%이던 것을 85%로 인상해 주는 등 다각적인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광역연합의 주요 활동 범주

- 내고향만들기 사업,
- 환경위생(쓰레기, 분뇨처리, 상수도)
- 방재(소방, 수해방지, 소방재해보상)

- 후생복지(개호보험, 의료, 병원, 노인복지)
- 산업진흥(산업도로, 임야, 농업공, 제2,3차 산업진흥)
- 지역개발(지역개발, 도시계획, 국토보전, 종합개발)
- 교육
- 기타(공평위원회, 직원교육) 등

#### 4) 프랑스의 광역행정체계

##### □ 프랑스의 광역경제권 추진현황

- 프랑스는 1960년대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권이 자생적으로 형성됨
- 1990년 국토경쟁력개발 장관회의(CIAT)가 광역행정단위인 레지옹(Région)을 초월한 대광역권 구상을 처음 밝힌 후, 국토 및 지역계획단(DATAR)24이 1996년22개 Région을 7개 대광역권25)으로 구분하는 안을 제시
- 1990년대 이후 광역 행정단위인 수개의 Région을 묶어 전국을 대광역권으로 나누어 개발하려는 구상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본격화
- 프랑스 정부는 1997년 12월 15일 국토개발정책의 재개 선언 이후 국토를 광역권(le grand ensemble interrégionaux)으로 재편하기로 결정
- 1998년부터 DATAR는 6개의 광역권을 구분
- 1998~2000년에 걸쳐 지역간 협력을 위해 6개 광역권에 MIAT(Mission Interministérielle et Interrégional d'aménagement du territoire, 국토개발을 위한 부처간·지역간 대표단)을 설치
- 2004년 5월 14일, 수상은 MIAT를 MEDCIE(Mission d'études et de

développement des coopérations interrégionales et européennes, 지역  
간·유럽간협력을 위한 연구 및 개발 대표단)로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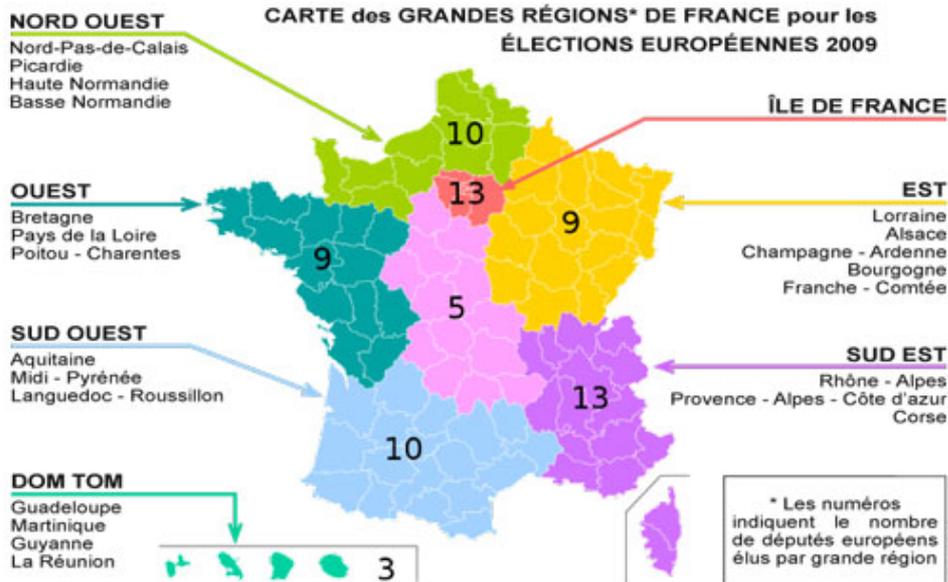
- DATAR는 2005년말 경제변화에 대한 범부처간 업무단(MIME)과 통합  
되어 국토와 지역 경쟁력을 위한 범부처간 대표단(DIACT; Délégation  
à l'aménagement et à la compétitivité des territoires)으로 확대 개편
- 2009년 12월 DICT를 다시 New DATAR( 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le à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Attractivité Régionale)으로 개편 (자세한  
내용은 보론 참조)

#### □ 초광역권 (super-region)

- DATAR가 수년간 연구를 거쳐 2000년에 공표한 '2020년 프랑스 구상  
(Aménager la France de 2020)'은 수도권 중심적 공간구조를 탈피하  
여 다핵공간구조 확립을 위하여 전국을 6개 초광역권(super-régions)으  
로 구분
  - 즉 6개 초광역권은 Grand Est(동부권), Grand Sud-Est(남동부권),  
Grand Sud-Ouest(남서부권), Grand Ouest(서부권), Pays du Nord(북  
부권), Bassin parisien(수도권)임
  - 2020년 프랑스 구상에서는 새로운 경제통계의 활용, 사회변화에 대응  
해서 다양한 형태의 지역간 협력체(interrégionalité) 구성 및 네트워크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됨
- 6개 초광역권은 유럽계획의 통계지역단위(NUTS I)에 상응함. 6개 초  
광역권은 대규모 하천(센, 론, 가론, 르와르, 뫼즈 강)을 지리적 범위로  
하여 경제활동과 인구 분포를 기초로 구분하였기에 초광역경제권에 해  
당(DATAR, 2000: 64-76; Girardon, 185)
  - Grand Est(동부권)은 로렌느(Lorraine), 알자스(Alsace), 프랑시-콩테(Franche-Comté), 부르고  
뉴(Bourgogne), 샹파뉴-아르덴느(Champagne-Ardenne) 레지옹으로 구성되고 1999년 현재 약  
811만명임

- Grand Sud-Est(남동부권)는 론-알프스(Rhone-Alpes), 프로방스-알프스-코트다쥐르(Provence-Alpes-Cote d'Azur), 랑그독-루시용(Languedoc-Roussillon) 레지옹, 그리고 이들 레지옹과 협력하는 오베르뉴(Auvergne) 및 코르시카(Corse) 레지옹으로 구성되고 인구는 1999년 현재 약 1402만명
- Grand Sud-Ouest(남서부권)은 아키텐느(Aquitaine), 리무진(Limousine), 미디피레네(Midi Pyrénées) 레지옹, 그리고 이들 레지옹과 협력하는 랑그독-루시용(Languedoc-Roussillon) 레지옹으로 구성되고 인구는 1999년 현재 약 627만명임
- Grand Ouest(서부권)는 브르타뉴(Bretagne), 페이드라르와르(Pays de la Loire), 프와투-샤랑트(Poitou-Charentes) 레지옹으로 구성되고 인구는 1999년 현재 약 777만명임
- Pays du Nord(북부)는 노르-파-드-칼래(Nord-Pas-de-Calais) 레지옹으로 구성되며 초국가적 도시 고리를 이루고 있고, 인구는 1999년 현재 약 400 만 명임
- Bassin Parisien(수도권)는 파리를 중심으로 센(Seine), 르와르(Loire), 므즈(Meuse), 모젤(Moselle) 강 유역에 이르는 광대한 분지로서 '일-드-프랑스 레지옹' 행정구역을 넘어서 파리의 영향권에 있는 캉(Caen), 루앙(Rouen), 르아브르(Le Havre), 오를레앙(Orléans), 투르(Tours), 르망(Le Mans), 아미앵(Amiens), 랭스(Reims) 등의 도시까지 포함하는데, 파리에서 반경 200-250km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으로서 1999년 현재 프랑스 전체 면적 약 30%, 인구는 약 2,060만명으로 프랑스(본토) 인구의 35%에 달함(Noin, 117-120 ; Damette et Scheibling, 1992).

<그림 3-7> 프랑스의 초광역권



□ 새로운 지역개발단위(pays, agglomeration)와 도시권

- 프랑스는 1990년대에 유럽연합의 지역정책 변화 및 역할 강화, 도시로의 인구 집중과 농촌의 쇠퇴화 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계획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을 재정비
  - 1995년의 국토계획 및 발전에 관한 법률(LOADT)은 지역개발의 새로운 기본 단위인 '도농권연합체(pays)'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전국토를 도농권연합체를 기초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
  - 1995년의 수정 법률인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및 발전에 관한 1999년 법률(LOADDT)은 '도시권연합체(agglomération)'라는 개념을 지역개발의 기본 단위로 추가

- 이러한 연합체(pays, agglomération)는 지방자치단체도 행정계층도 아닌 새로이 창안된 협력 공간
- 도농권연합체(pays)는 도시와 농촌 배후지 간에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결속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둠
- 이는 1995년 2월에 42개가 실험적으로 구성되었고, 평균 인구는 65,892명(최저 17,000명, 최고 378,742명), 평균 코뮌 수는 78개였으며, 1999년 9월말에 106개 구성, 2007년 1월 현재 334개(프랑스 인구의 41%, 본토 면적의 73%에 해당)가 구성되어 있음(Leurquin, 2002: 267, 286; DIACT 내부 자료)
- 1999년 LOADDT 법률에 의하면 도시권연합체(agglomération)는 통계청(INSEE) 도시화 지표의 하나인 '도시권(aire urbaine)' 중에서 총인구가 5만명 이상이며, 중심 코뮌의 인구가 1만 5천명을 넘는 지역이다. 도시권연합체는 코뮌간의 협력기구인 도시공동체 (communautés d'agglomération: CA), 대도시공동체(communautés urbaines: CU)가 구성될 수 있는 공간에 해당함
- 1999년 인구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프랑스 본토에는 총 354개의 '도시권(aire urbaine)'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도시권에는 전체 인구의 77%가 거주하고, 이 중에서도도시권연합체(agglomération) 구성이 가능한 지역은 140개에 달함

□ 국가 레지옹 간 계획계약(CPER : Contrat de projets État-région)

○ 계획계약 도입의 배경

- 유연한 국토개발방식에 대한 요구 대두 : 국가주도의 국토개발계획에 한계점이 드러나고, 지나치게 행정구조가 세분화되어 문제가 제기됨
-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방분권화가 추진되었고 1982년 기존의 행정협의체였던 레지옹에 공법상 법인격과 예산 자치권을 부여함

- 1982년 이후 프랑스의 국토 및 지역계획 체계는 1982년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Loi portant réforme de la planification)에 의해 변화하게 됨
- 이 법안에 의해 프랑스 국토계획은 전국 계획(plan de nation)과 레지옹계획(plan des régions)으로 구분되고, 이 두 계획을 연결시키는 수단으로 계획계약(contrats de plan)을 규정함

○ 계획계약의 유형

- 계획계약은 국가와 지역 모두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 및 투자분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적으로 상호 약속하는 활동임
-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국가 - 레지옹 간 계약을 중심으로 삼고 있지만, 5개 산악지대의 지역간 협약(CIM : Conventions Interrégionales de Massif), 강 유역을 따라 다섯 개의 지역 간 협약이 존재함
- CIM 협약은 Alpes, Jura, Massif Central, Pyrénées, Vosges 다섯 개 산악 지역에 있음
- 유역 협약은 Loire, Meuse, Rhône, Seine, Garonne-vallée du Lot 등 다섯 개 유역이 해당됨

<표 3-4> 레지옹 간 협약 현황

구분	국가	레지옹의회	기타 단체	합계
CIM Alpes	61,730	67,560		129,290
CIM Jura	16,200	19,510	32,970	68,680
CIM Massif Central	61,200	61,200		122,400
CIM Pyrénées	41,870	41,970		83,840
CIM Vosges	20,000	21,495	29,083	70,578
total CPER massifs	201,000	211,735	62,053	474,788
Plan Loire	129,135	111,355	21,300	261,790
Plan Meuse	21,800	17,450	8,700	47,950
Plan Rhône	214,410	200,440		414,850
Plan Seine	71,600	49,843		121,443
Plan Garonne-vallée du Lot	169,800			169,800
total CPER fleuves	606,745	379,088	30,000	1,015,833

자료: <http://www.datar.gouv.fr/IMG/Fichiers/CPER/CPER%20engagements%202007-2013>

- 여기서 CPIER (Contract de Projects Interrégional Etat-région)은 레지옹간 협약을 토대로 국가와 협약을 맺은 레지옹들 간의 계약을 말함
- 2007~2013년 국가와 레지옹 간에 체결된 CPIER에는 국가, 관련 레지옹 의회, 데빠르뜨망, 수자원공사, 환경에너지관리공사 등이 참여함
- CIM에 참여한 레지옹으로는 알프스 2개, 쥐라 2개, 마시프 상트랄 6개, 피레네 3개, 보주 3개가 있음
- 강 유역의 Coventions Interrégionales에는 루아르 강 9개, 뵈즈 강 2개, 론강 5개, 센강 6개, 가론강 4개가 있음

□ 산악 지역 간 협약 (Conventions interrégionales de Massif )

- 이런 종류의 협약은 2005년 2월의 농촌개발법(loi du 23 février 2005 relative au développement des territoires ruraux)에 규정되어 있음
  - 이 법에서는 장기적인지역 간 전략적 협력 패턴을 기록하고 있음
  - 개발계획은 2004년 후반에서 2006년 후반 사이에 작성됨
- 경쟁력, 지속가능발전, 지역통합을 목표로 해서 이들 영역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산악지역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레지옹 간 협약을 맺게 됨
  - 새로운 고객수요와 기후변화에 대비한 관광 투자
  - 에너지 절약과 재생, 재활용
  - 목재 생산
  - 산악지대의 생물다양성 보존
- 산악지역간 협약의 목표는 이웃 지역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가능하게 해서 경제개발의 기회를 삼는 데 있음

- 이와 함께, 지역 수준에서 보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전체지역을 아우르는 공통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알프스 산악레지옹 간 협약 (Convention interrégionale POUR LE MASSIF DES ALPES 2007 – 2013 )

○ 협약 참여자

- 정부과건 레지옹지사,
- 론알프스(Rhône-Alpes) 레지옹 의장,
- PACA(Provence-Alpes-Côte d’Azur) 레지옹 의장,
- RMC(Rhône Méditerranée Corse) 수자원공사, 환경에너지 관리공사(ADME : Agence de l’Environnement et de la Maîtrise de L’Energie)

○ 론알프스 협약수립의 과정

- 1985년 1월 산림보호와 개발에 관한 법률(Loi n°85-30) 수립
- 2002년 2월 지방민주주의에 관한 법률 수립(Loi n° 2002-276)
- 2002년 레지옹 지사의 산악지역 협력 조정에 관한 권한을 법령을 마련함 (décret n°2002-955)
- 2005년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법률 (loin° 2005-157)
- 2004년 산악지역 경계 수립에 대한 정령(décret n°2004-69)
- 유럽연합의 공간개발계획(SDEC : schéma de développement de l’espace communautaire) 수립
- 2006년 론 알프스, PACA 두 레지옹과 산악지역 위원회(Comité de Massif)에 의해서 레지옹 간 개발 계획 수립

- 2006년 11월 론알프스 레지옹의회에 의해 산지 개발전략이 채택됨
- 2006년 11월 론알프스 레지옹 의회는 산악지역 개발 및 레지옹 간 협력계획을 승인함
- 2007-2013 지역전략 초안이 PACA의 산악개발을 위한 지역협력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이어 토지이용과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짐
- 2006년 3월 국토계획및개발에관한부처간위원회(CIACT)가 알프스 산악지역 레지옹간 협약(convention interrégionale pour le massif des Alpes)을 결정함
- 협상을 조정하는 권한은 정부로부터 레지옹 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각 레지옹의 지사들은 국가-레지옹 계약과 레지옹 간 협약(CIMA, convention interrégionale du massif des Alpes)에 따라야 함

○ 론알프스 협약시 고려 사항

- 알프스의 구체적인 개발은 두 지역에 걸친 개발 계획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알프스 산악위원회와 두 레지옹이 채택한 계획안을 근거로 함
- 레지옹간 협약은 국가-레지옹 계약 하에 추진되는 일련의 정책들과 일관성이 있어야 함
- 자연자원, 경관, 유적의 품질을 보호하고, 산악지역의 생물다양성을 강화하는 한편 알프스 거주 인구에게도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 알프스의 매력을 유지하고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기후변화의 충격으로 인해 경제활동들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음
- 전원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위한 특별한 장소를 조성할 필요가 있고, 알프스 지역들을 유지하는 소규모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산악지역 개발계획을 위해서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림 3-8> CIMA 에 참여하는 두 레지옹과 DIACT



□ 레지옹 내 정부 협력

○ 레지옹 의회와 레지옹경제사회위원회

- 레지옹 의회는 지방정부의 집행기관으로서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함
- 광역권 계획, 특히 수도권 계획과 관리는 국가계획보다 레지옹 의회의 계획과 관리가 주도적임
- 레지옹경제사회위원회(conseil économique et sociale régionale: CESR)는 경제사회 분야(기업, 조합, 공공기관 및 협회, 전문가 등)의 대표로 구성된 자문기관으로서 레지옹 의회의 심의에 앞서 계획계약에 관련된 분야에서 자문함
- 특히 CESR은 레지옹의회와 함께 지역의 의회기구 성격을 가짐

○ 레지옹지사, 레지옹행정위원회

- 레지옹 지사는 국토정비 및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국가 정책과 유럽연합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집행함
- 지역지사는 국토계획, 경제개발, 농촌개발, 환경 및 지속가능 개발, 환경 및 지속가능한 개발, 문화, 고용, 주거, 도시혁신, 공공보건 사업을 시행함
- 레지옹행정위원회 역시 중앙부처에서 파견된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이

위원회의 구성원은 중앙부처에서 파견된 레지옹지사를 포함, 데빠르뜨망 지사, 사무총장, 재무국장, 감사관 등을 모두 포함함

- 레지옹행정위원회는 중앙부처의 지역사업을 총괄하는 위원회로서 레지옹지사가 국가전략사업을 추진할 때 자문기관 역할을 함

○ 국토개발 및 계획을 위한 지역협의회(CRADT : Conférence Régionale d'Aménagement et de Développement du Territoire)

- CRADT는 각 레지옹에 설치되며 레지옹지사에게 자문역할을 함
- 이 협의회는 지역에서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에 대한 레지옹 내, 데빠르뜨망 간 계획을 자문함
- 실질적인 집행권한은 없지만 레지옹 내 각급 지방정부와 정부기관, 협회 대표들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협력체로 이해할 수 있음

□ Poitou – Charentes의 CRADT

○ CRADT의 구성

- Poitou - Charentes의 CRADT는 총 68명으로 7개 하위 구성되어 있고 7개 하위 분과로 나뉘어짐
- 7명의 중앙정부 대표들과 레지옹병원 협회
- 12명의 레지옹 의원들
- 8명의 도의원들(conseillers généraux)
- 11명의 코뮌(commune), 도시권연합체공동체(CA, communautés d'agglomération), 시읍면공동체(CC, communautés de communes), pays 대표들 (Poitou - Charentes 레지옹 내에는 대도시공동체는 없음)

- 12명의 CESR 의원들
- 12명의 레지옹 내 조합 대표들
- 6명의 주민단체 대표들

○ CRADT의 기능

- CRADT는 지역계획을 위한 자문위원회임
- 그러나 단순한 자문기능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레지옹 내 여러 데빠르뜨망 간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총괄한다는 의미가 있음
- 공공서비스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민관 파트너십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음
- 나아가 국가와 레지옹의 대표들이 하나 이상의 지역 단위에 연계되어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CRADT 여러 지역들에 대한 연구를 자문받을 수 있음

○ CRADT의 운영방식

- CRADT의 의장은 레지옹 지사와 레지옹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맡게 됨
- 공동의장들은 협의회를 법적으로 관리하고, 협의회 구성의 변화를 책임지며, 회의를 주재함
- 레지옹 지사와 레지옹 의회 의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기를 마감할 수도 있음
- 이들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위원에게서 위원직을 박탈하거나 개인적인 경고를 줄 수도 있음
- CRADT는 비상시적으로 필요에 따라 운영되지만 1년에 최소한 1회는 소집되어야 하고, 회의 날짜 12일 전에는 초청장이 발송되어야 함
- 모든 구성원이 동일하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음
- CRADT 차원의 전문적인 훈련코스가 있어서 각 위원들은 전문화된 훈련코스에 참여하여 학습할 의무를 가짐

## □ 토론 : New DATAR 법

- 최근 DIACT를 다시 DATAR로 개정하는 법안이 발효됨 <Décret n° 2009-1549 du 14 décembre 2009 créant la 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le à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attractivité régionale>
- 다만 새로운 DATAR는 그 약자는 이전과 동일하지만 세부명칭은 다음과 같이 달라짐 “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le à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Attractivité Régionale”
- DATAR의 정의
  - 총리의 권한 하에 있는 DATAR는 국토의 개발과 계획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준비하고, 이를 이행함
  - 이 분야에서 DATAR는 정부 부처 간 협력을 이뤄내고 국토와 지역계획에 관한 관찰,연구, 전망, 모니터일, 평가를 수행
  - DATAR는 지역의 경제유인책, 지역 간의 응집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및 정책을 수행함
  - 이로써 경제변화가 일어나고 접근성이 향상되며 지속가능하고 조화롭고 일괄된 도시 및 농촌 지역을 만드는데 힘쓰고 지역혁신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정책수립에 기여함
- DATAR의 역할
  - DATAR의 대표는 국가 경쟁력, 사회적 응집, 지속가능한 개발전략 수립에 참여함
  - 지역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전반적인 사회서비스에의 접근을 증진시킴
  - 이 조직은 국가정책을 수립/이행/모니터함과 동시에 EU의 경제적 사회적 영역적 응집에도 기여함

- 국가의 이해에 따른 서비스와 인프라스트럭처의 배치에 있어서 지역적인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함
- 각 주와 지방자치체를 포함하는 지역개발에 있어서 정책수립과 절차를 준비 및 모니터링하며, 계약관리를 도움
- 토지와 부동산 관련 부서에 의해서 정보를 제공받으며, 종합적인 책임을 짐

## 5) 시사점

### □ 영국

- 영국의 다지역협약은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자치계층에 해당하는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을 위해 맺는 협약임
  - 영국의 다지역 협약은 동일 계층의 지방정부가 아니라 해당 영역이라는 지리적 범주를 연대의 틀로 사용함으로써 협약의 유연함이 더 높음
- 어떤 제도적 틀에서도 정치적 권한, 즉 민주적 책임성의 한계는 명확하게 나타났으며, 선출직 대표와 선출 선거지역과의 관계도 중요한 이슈로 나타남
- 광역경제권의 과제선정에 있어 지방에서부터 출발하는 상향식 접근을 채택하여, 각 광역경제권 별 고유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음
  - LAAB의 사례에서 중앙정부는 위원회에 관한 제도적 틀을 제시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지역상황에 맞게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물론 중앙정부에서의 전체적인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선에서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음
- 광역경제권역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광역경제권 정책을 추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경제전략의 수립 및 의결과정에 있어 지역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 추진기구 내에 지방의원, 노동조합 및 지방 기업가 등 지역주체 중심의 집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식은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임

## □ 프랑스

### ○ 프랑스의 초광역경제권의 설정 방식과 추진조직

- 프랑스의 초광역경제권은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 전망, 실험을 하는 지역간 연구체제이며, 6개 초광역경제권에 두고 있는 부처간 및 지역간 협력사업단(MIAT)은 그 경계를 고정시키지 않는 유연한 협력구조로 되어 있고, 기존 조직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 프랑스의 계획계약 중 산악지대의 지역간 협약(CIM)에서 알 수 있듯이, 지리적 자연 지역과 결부되어 있는 관광이나 환경등의 이슈에서 광역행정의 효과가 제고됨

### ○ 지역간 협력 형태로 다년도 협정(협약) 및 계약을 많이 활용하여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

- 프랑스의 경쟁거점(산업클러스터)은 지역경계 및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전체의 38%를 차지할 정도로 높고, 산악 및 연안 지대의 경우 지역간 협력(다년도 협정, 계획계약)이 일반화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 프랑스의 지역간 협력체제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다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 연계 및 조정 시스템을 통하여 비교적 협력이 잘 되고 있다는 점

- DATAR는 지역정책 및 계획에서 각종 활동을 조정하고, 새로운 계획

및 정책을 주도하며, 일상적인 의미의 지역발전 추진기구가 아니라 홍보, 촉진 및 재정적 인센티브의 제공, 연구 및 혁신 등을 포함하는 독창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지역간 협력제도는 분권화 시대에 부응하여 중앙정부의 조정 및 촉진 기능을 유지하면서 분권적 방식을 수용
  - 즉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레지옹에게 지역계획 등에 대한 권한 확대, 국가 임명 레지옹 지사에게 권한 및 재원의 위임, 수평적인 계약 및 협정 방식 활용, 각종 위원회의 자문 및 평가 기능 강화 등이 이에 해당함
  - 또한 지역간 협력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간 협력사업에 대하여 조정, 촉진 및 재정 인센티브 등이 행해지고 있음

## □ 일본

- 일본 광역지방계획의 시사점
  - 일본의 광역지방계획은 지역의 주체성을 중시하고, 지방정부와 주민의 의견을 폭 넓게 반영하였다는 특색이 있음
  - 즉, 미시적으로는 ‘육아환경 정비’, ‘전통 장인기술의 계승’, 거시적으로는 ‘초국경적 사람 · 상품 · 자본의 연계 · 교류 강화’ 등 권역별 특성에 부합하면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발굴되었음
  -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국제화·정보화 등의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권역의 실정에 맞는 미래상을 수립 · 공유하는 계획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광역연합 제도의 시사점
  - 광역연합은 다양해 가는 광역행정수요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계획을 중시하고 국가나 도도부현으로부터 권한을 대폭 위임받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행정서비스의 균형화와 제고를 위한 사전 실태조사 및 전문 인력의 확보 필요
- 자치단체 간 비용 부담을 통한 부담의 경감
- 개발계획 수립과정에 주민 및 전문가 집단의 참여 확립

## IV.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운영실태분석

### 1. 7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구성현황

#### 1)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 □ 총괄

- 권역별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7월30일 출범한 제주권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시작으로 2009년 10월19일 호남권을 마지막으로 공식 출범되었음

구분	위원 구성	공식출범
수도권	공동위원장 3인(서울·인천·경기 시도지사) 포함 15인	2009.10.5
충청권	공동위원장 3인(대전·충북·충남 시도지사) 포함 15인	2009.9.21
호남권	공동위원장 3인(광주·전북·전남 시도지사) 포함 15인	2009.10.19
대경권	공동위원장 2인(대구·경북) 포함 15인	2009.8.31
동남권	공동위원장 3인(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포함 15인	2009.10.6
강원권	위원장(강원 도지사) 포함 12명	2009.8.4
제주권	위원장(제주 도지사) 포함 15명	2009.7.30

- 공동위원장을 맡게된 각 시도지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발전위원장등의 추천에 의해 임명된 위촉직 위원 총 86명을 포함 102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표 4-1>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권역별 위원

권역별	위원수		
	계	당연직	위촉직
계	102	16	86
수도권	15	3	12
충청권	15	3	12
호남권	15	3	12
동남권	15	3	12
대경권	15	2	13
강원권	12	1	11
제주권	15	1	14

- 직종별 위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계 인사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대학교수, 연구원 등의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4-2>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직종별 위원구성

권역별	직종별						
	계	지자체장	시도의원	연구원	대학교수	지역경제계	기타
계	102	16 (15.7%)	12 (11.8%)	19 (18.6%)	21 (20.6%)	26 (24.5%)	8 (7.8%)
수도권	15	3	-	4	6	2	-
충청권	15	3	3	3	1	4	1
호남권	15	3	3	2	4	1	2
동남권	15	3	3	4	1	4	-
대경권	15	2	2	1	6	3	1
강원권	12	1	1	2	1	5	2
제주권	15	1	-	3	2	7	2

## □ 수도권

### ○ 2009년 10월 5일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공식출범

- 수도권광역경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모두 15명으로 구성
- 출범과 동시에 개최한 제1차 회의에서는 사무총장의 경과보고 및 향후 업무방향 설명과 수도권광역경제권 발전계획(안),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규정(안), 2010년 사업예산(안)을 심의·의결
- 수도권광역경제권발전 5개년 계획(2009~2013)에서는 광역경제권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함
- 3개 시·도는 지식 기반산업 육성, 광역 인프라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 기지 구축, 수도권 규제합리화 등 4개 전략을 설정해 수도권을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

## □ 충청권

### ○ 2009년 9월 21일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공식출범

- 충청권 광역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도간 협력사업 발굴과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해당 광역경제권 사업의 관리평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등 충청권 3개 시·도간 지속적인 업무 협조 체제를 구축

### ○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핵심분야

- 충청권 광역발전전략으로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산업 행정, 문화의 중심 거점을 1허브(Hub)로 하여 ▲첨단부품소재·에너지산업 발전축 ▲그린산업 발전축 ▲문화·관광산업 발전축 ▲메카트로닉스산업 발전축 ▲BIGT첨단산업 발전축 등 5개 산업발전 축을 기본으로 하는 구상안을 발표하고, 선도산업과 전략산업, 그리고 중소규모 산업집적지 또는 거점을 연계하여 충청 광역경제권이 통합적으로 발전 가능한 ▲첨단과학산업 ▲부품·소재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바이오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 등 5대 광역연계 산업권으로 설정·추진 예정

## □ 호남권

### ○ 2009년 10월 19일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공식출범

-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추천인사 3명, 시도지사 추천인사 9명 모두 15명으로 구성, 광역계획수립, 자원배분 및 평가관리 등 호남권 광역 정책의 조정·심의기능을 담당
- 호남권 광역경제발전계획은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산업의 창조지역」을 비전으로 하고, 친환경 녹색산업 거점 육성, 문화예술과 해양·생태 관광육성, 지식창출기능 고도화, 통합인프라 구축, 풍요롭고 살기 좋은 녹색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함

## □ 대경권

### ○ 2009년 8월 31일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공식출범

- 공식출범과 함께 제1차 회의를 열고 대경광역경제권 발전계획(안)과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규정(안) 등을 의결
-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는 시·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노동일 경북대 총장, 류규하 대구시의회 부의장, 박인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인중 대구상의회장,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홍철 대구경북연구원장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
- 광역경제발전위는 앞으로 광역계획 수립, 시·도간 협력사업 발굴, 자원분담, 광역경제권 사업의 관리·평가 등을 처리하며 시도간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게 됨
- 광역경제발전위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은 사무총장 1명과 시·도 과장급 공무원 2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
- 자문단은 정부의 지역정책과 대경권 광역경제권발전계획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진 분야별 전문가 50명을 선정, 4개 분과(지역산업, 인력양성·과학기술, 교류·물류망 확충, 문화·관광육성)로 구성, 위원회의 주요 정책결정을 위한 자문역할을 수행

## □ 동남권

### ○ 2009년 10월 6일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공식출범

- 공식출범과 함께 개최한 제1차 회의에서 3개 시·도가 협력할 수 있는 광역사업 발굴, 협력사업에 대한 재원부담, 사업의 관리평가 등을 결정해 '5년 단위의 광역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설정
- 또한 '환태평양 시대 기간산업 및 물류·교통의 중심지'를 비전으로 고부가 클러스터 형성과 산업·관광의 융합기지화, 물류·교통 인프라 구축, 첨단해양산업의 세계 일류화, 초국경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광역계획을 심의함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는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정책에 맞춰 지역선도산업 육성 등의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구로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3개 시·도 및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등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함

### ○ 동남권 광역개발의 내용과 전망

- 동남권 3개 시·도는 '환태평양 시대 세계 제일의 기간산업 및 물류·교통 중심지'를 비전으로 첨단 해양산업 세계 일류화,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해 10월 6일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심의·의결
- 이로써 3개 시·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앞으로 5년 단위 광역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가 연계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며, 재원 부담 및 사업 관리,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됨

## □ 강원권

### ○ 2009년 8월 4일 강원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공식출범

- 공식출범과 함께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강원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규정안'과 '강원권 광역경제발전계획안'을 심의·의결

- 위원은 위원장(도지사)을 비롯하여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한 3명과 도지사가 선정한 8명 등 모두 12명(지자체장1, 도의원1, 연구기관2, 도내 학계대표1, 산업·경제계5, 기타2)으로 구성
- 위원회는 광역경제권 계획수립, 협력사업 발굴, 광역경제권 내 사업관리 및 평가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됨

○ 강원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비전과 계획

- 최종 비전을 '동북아 녹색성장의 신 발전지대'로 정하고, 부문계획인 선도산업(의료관광·의료융합), 전략산업 육성, 인재양성 및 과학기술진흥, 발전 거점 육성, 교통·물류망 확충, 문화·관광육성 및 자원공동이용, 타 광역경제권 간 연계·협력 방안 등 8개 분야에 대한 부문별 사업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주권

○ 2009년 6월 18일 제주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공식출범

-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제주권 선도산업으로 '물·MICE 산업'이 최종 확정된 가운데 이들 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 광역경제권 4대 선도프로젝트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제주해군기지 건설)과 해양과학관 건립, 영어교육도시 조성, 제주 항공운송능력 확충 등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으로 선정·관리해 집중 투자하고 국가재정운영계획(2009~2013년)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됨

○ 제주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비전과전략

- ▲경제산업 ▲제도 ▲사회공동체 ▲환경과 공간 ▲인적자원 개발 ▲제주프로젝트 등 6대 분야 전략과 54개 추진과제가 제시된 '제주 비전 수립
- 실제 '접근성 제고' 제주 프로젝트 전략의 핵심인 신공항 건설은 국제

자유도시 인프라 구축과 미래 제주산업을 견인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필수사업으로 보고 정부의 정책 상 우선순위 요구

- 발전계획에서는 아시아 최고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최종 발전비전으로 정해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 '관광·녹색성장을 통한 신성장 동력구축', '6차산업화를 통한 자립형 경제기반 구축'을 중간 목표로 제시함

## 2) 사무국

### □ 사무국 구성

- 2009년 12월 현재,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사무국 구성은 사무총장 선임 을 완료
  - 수도권 강래천(前평택부시장), 충청권 권오창(前대한주택보증사장), 호남권 최영기(前반월시화 혁신클러스터 추진단장), 동남권 옥우석(前국세심판원 행정실장), 대경권 박광길(前대구시 신기술산업본부장) 선임
  - 강원권과 제주권은 도 기획관리실장이 겸직
- 현재 관인제작, 시도 직원 파견, 연구원 채용, 업무분장, 자문단 구성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대경권의 경우, 광역위 자문단을 구성한 후 회의(10.19)를 개최한 바 있음
- 2009년 12월초 현재, 각 권역 공통(충청권 제외)적 미흡사항은 권역별 자문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은 상태임
  - ※ 자문위원회 회의일정 : 대경권 12.2(수), 호남권 12.3(목), 동남권 12.7(월), 수도권 12.22(화), 충청권 '10.1월('11.24 제3차 회의 개최)
- 지역의 특성에 따라 권역별로 일부 지연 사례가 있었음
  - 충청권: 타 권역에 비해 연구원 채용(4)이 다소 늦음(11월말 채용)

- 동남권: 통계조사를 위한 연구원(1명) 미채용(3명은 기채용)
- 제주권: 광역위 자문단 미구성(시도발전협의회와 통합)

#### □ 연계·협력 사업 발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 광역사업의 평가범위, 평가계획 수립시 광역위 의견수렴 필요(수도권), 광역사업의 평가시 광역위의 중심적인 역할 필요(제주권) 등의 의견 개진
- 유관기관과 업무협조 차원에서 권역별로 광역경제발전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계획 중에 있음
  - 수도권은 시도·시도연구원, 도시공사과 함께 개최(10.29~30), 동남권·대경권은 시도·선도산업지원단·인재양성센터·TP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연말에 개최 준비중
- 충청권은 광역위가 중심으로 시도, 유관기관(26), 산단공 등으로 구성하여 광역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10.28)하였음
  - 동남권은 광역위가 TP를 중심으로 이미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11.4), 대경권도 TP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조정 필요

## 2. 충청권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사례분석

### 1) 충청권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구성 실태

#### □ 충청권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 충청권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대전광역시장,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출범함
- 이후 지역위 추천 3인중, 1인이 광역위 구성이후, 사무총장으로 선임되어, 현재 공석 상태임
- 시도지사가 추천한 3인은 시도별로 각각 지방의회 의원, 시도발전연구원장, 시도 테크노파크 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4-3> 충청권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구성 (2009.12. 현재)

성 명	직 책	비 고
박 성 호	대전광역시장	당연직(공동위원장)
정 우 택	충청북도지사	당연직(공동위원장)
이 완 구	충청남도지사	당연직(공동위원장)
권 오 창	경희대 행정대학원 교수	지역위추천 (현 사무총장/공석)
이 상 윤	충청YMCA 상임대표	지역위 추천
이 태 일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 상임고문	지역위 추천
오 영 세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대전시 추천
육 동 일	대전발전연구원장	대전시 추천
이 진 욱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대전시 추천
이 언 구	충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위원장	충북 추천
박 철 용	충북개발연구원장	충북 추천
임 종 성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충북 추천
황 우 성	충청남도의회 의원	충남 추천
김 용 웅	충남발전연구원장	충남 추천
김 학 민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충남 추천

□ 충청권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사무국

- 사무국은 사무총장 1명과 파견공무원, 연구원 등 13명으로 구성
- 사무총장 1(전문계약직 가급), 파견공무원 4급 2, 5급 3, 6급 1, 연구원·민간전문가 4, 사무원 2
- 사무국의 사무실은 시·도 건재순서에 따라 2년씩 윤번제로 순회 입지하되, 다만 입지 첫해인 2009년도의 잔여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사무실 확보 비용은 입지 시·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입지순서 : 대전(2009~2011), 충북(2012~2013), 충남(2014~2015)
- 사무총장은 지역발전위원회 운영지침의 절차에 따라 공개채용하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사무총장의 시·도간 조정역할 등 중요성을 우선 고려 선발
- 파견 공무원의 시·도별 정원은 다음과 같이 규정함
  - 4급 정원 2명은 아래 표와 같이 2개시·도에 각 1명씩 순회 배정하고, 연도별 정원이 배정된 시·도에서는 별도 정원을 확보, 직원을 파견함

구 분	09~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대전	×	○	○	×	○	○	....
충북	○	×	○	○	×	○	....
충남	○	○	×	○	○	×	....

- 5급 정원 3명은 시·도별 각 1명씩 상시파견하며, 6급 1명은 사무국 입지 시·도에서 파견함
- 기타 연구원·민간전문가, 상근직 등의 직원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함
- 위원회 발족 및 사무국 설치준비에 관한 업무는 3개시도 합의(2008.11.26)로 구성된 '충청광역경제권추진팀'에서 추진하였음

<표 4-4> 충청광역경제권 추진팀 구성

성명	소속	직위	비고
이택구	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장	팀 장	총괄
정천우	대전광역시 행정지원과	행정5	
강병선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행정6	
김태현	대전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박태훈	대전TP	선임연구원	
김문근	충청북도 균형정책과	행정5	
장인수	충청북도 균형정책과	행정6	
김병관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정재욱	충북TP	선임연구원	
사남일	충청남도	행정5	
윤여권	충청남도	시설6	
백운성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전영노	충남TP	책임연구원	

※ 이외에 자문단은 12월 18일 현재 구성중에 있음

## 2) 충청권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유관기관 운영실태

### □ 충청권행정협의회

- 1999년에 지방자치법 제154조의 2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시·도지사 상호간, 시장·군수·구청장 상호간, 시·도의회 의장상호간, 시·군·자치구 의회의장 상호간에 교류와 협력의 증진 및 공공문제의 협의를 위한 전국규모의 협력조직을 의미

-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령이나 정책 등에 관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의견제시가 주목적
- 충청권행정협의회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등 충청권의 3개 광역지방정부가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만들은 광역차원의 상위수준 협력조직을 의미
- 동 행정협의회의 구성원은 3개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장이고, 3개 시·도의 각종 정책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는데 목적

○ 충청권경제협의체 (구성합의, '07. 8. 27)

① 경제협의회

- 정책결정, 광역경제활성화방안 협의, 경제현안 공동 대응 등
- 민간인 45명(시도별 15) 구성 / 경제전문가 및 경제단체장 등

상공회의소 회장(1), 산업단지 협의회장(1), 발전연구원장(1), TP원장(1), 시·도 의원(1), 건설협회 시(도)회장(1), 전략산업기획단장(1), 경제전문 교수(2), 벤처연합회장(1), 기업(경제)인(4), 시·도 국장(1)

- 광역경제활성화 공동발전 방안 연구·협의(필요시 정부 건의)
- 시·도의 경제정책에 대한 자문 및 전문가 네트워킹 구축
- 주요경제 현안 공동 대응방안 및 장·단기 협력사업 발굴 공동추진
- 충청권 경제정책에 대한 3개시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협의
- 산·학·연 협력·교류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 그 밖에 시·도의 협이가 필요한 사항 등
- 운영 : 정례회의(분기 1회) 및 필요에 의한 수시회의

- 3개 시·도가 1년씩 순번제로 협의회 주관(필요경비 확보)

② 실무협의회

- 구성 : 위원장(경제협의회 주관 경제관련 국장)

- 위원 : 관련 공무원 및 관련기관·단체 임원중 ( 시도별 10명 씩 총 30명 / 해당부서 공무원 및 관련기관·단체 임원급)

- 선정범위 : 민간인 위주 구성

경제정책과장,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전략산업기획단 책임연구원, 벤처연합회 사무국장, 이업종교류 연합회 사무총장, 여성경제인협회 사무국장, 산업단지협회 사무국장, 벤처협회

※ 시·도실무협의를 따라 실무위원회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가능

- 기능 : 경제협의회 작성안건의 사전 협의 및 실무적 검토

③ 사무국

- 사무국 지정 : 3개 시·도 발전연구원

- 『경제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실무지원 역량과 전략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곳으로 지정 ( 시도별 3명씩 총 9명 / 3개시·도 발전연구원 사무국 지정)

- 기능 : 정책집행기능

- 인적, 산업적, 정책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발전방안 강구

- 정보·인적N/W 구성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포럼, 심포지엄 개최

- 권역별 관련산업 로드맵작성 등 산업화 지원·구축

- 각 산업의 장·단기적 수요를 파악, 전략적 접근 모색

- 충청권 특성화 전략 및 산업화 지원방안, 집적화, 첨단산업 기술거래 등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산업별, 업종별 충청권 클러스터 구축 등
- 국가 주요행사 유치·지원 및 클러스터별 전문가 위촉 지원 등

### 3. 문제점 및 개선과제

#### 1) 운영실태상 문제점

##### □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사무국, 자문단 운영의 문제점

##### ○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출신지역 중심적 사고

- 현재 위원구성이 지나치게 시·도별로 안배되어(3개 시도지사, 3개 시도 연구원장, 3개 시도 테크노파크 단장) 지역적 관점을 벗어나기 어렵고, 광역적 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을 두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출신지역의 이익을 전제로 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 과급효과가 큰 연계 및 협력사업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 사무국 및 자문단 운영 문제

- 사무국 및 자문단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규정은 마련되었으나 운영세부규칙이 수립되지 못하여 자문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예를 들면 자문위원의 자문비 설정, 회의개최횟수, 심의안건 등)
- 인사, 조직, 자문조직운영등과 관련한 세부규칙의 제정이 시급함
- 중앙정부차원에서 세부규칙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로 일부 사정에 맞추어 수정사용을 권고할 필요가 있음
- 사무국 및 자문단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함
-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운영비(사업비 제외)는 대부분이 신규채

용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활용되고 있고, 사무실 임대료, 기타 제반 경비는 지자체 출연금(내년도 각 지자체별 1억원 책정, 대전시 사무실 무상임대)으로 활용되고 있어, 자문단 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경비가 부족한 실정임

#### □ 지역위 및 중앙정부-광역위-시도 간의 협력문제

##### ○ 광역위 예산 규모와 배분권 문제

- 법적으로는 지역위와 광역위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관계가 설정되어 있으나, 지역위가 광역권 계획에 대한 승인과 예산배분권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중앙의존적 문제점 상존
- 현행 광역위의 주요사업이 연계협력사업(전국 500억 예산)에만 국한되어 있고, 이 또한 10여개 사업으로 분할 지원되는 현실에서 광역위가 지방정부에 제시할 인센티브가 약함

##### ○ 지역위원회의 선도프로젝트 선정문제

- 특히 권역별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지역발전위원회 주도의 권역별 선도산업과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함으로써 각 시도가 광역적 연계와는 무관하게 지역의 이해에 집중하고, 광역권 내 시도간의 협력보다는 중앙과의 관계에 치중하는 문제점 노정

##### ○ 광역위원회의 위상 문제

- 광역위원회는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사이의 위계를 차지하고 있으나, 선출직 대표가 관할하는 구역, 즉 정치적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성과 책임성에 한계가 있음

#### □ 광역위 - 유관기관 간의 수평적 협력관계 상 문제

##### ○ 광역위원회가 아직까지 실질적인 활동을 진행하지 못하여 시도와의 수평적 협력관계의 실제과약이 어려움

##### ○ 사무국에 각 시도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광역적 업무와 함께 시도와의 협력문제를 담당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업무연락을 담당하는 수준

에 머무르고 있음

## 2) 향후 개선방향과 과제

### □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운영 개선과제

- 시도의 지역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광역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시도 파견 공무원 중심의 사무국 운영으로 인한 사무국 내 갈등 해소 방안이 없음
- 광역발전위원회 운영 인력 문제
  - 자문단 운영을 위해서는 인재풀의 관리가 필요하나 신생조직으로 인재풀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므로, 지역 인재풀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각 지자체에서 파견된 인원은 인사이동에 따라 1년 미만에 각 지자체로 복귀해야 하는 관계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3개 지자체에서 파견되어 있는 관계로 사업추진에 있어 갈등이 상존함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관계
  - 지방의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은 필요하기는 하나, 초단기간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 공모에서 선발 추천이 의회와의 관계, 각 의회 간 참여한 갈등 등으로 상당부분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의회와의 협력관계보다는 우선 지자체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의회와의 조율은 지자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함

## V. 개선방향

### 1. 광역발전위원회(광역위)의 기능강화

#### □ 광역위의 기능 강화 및 명확화

- 광역위의 실질적 기능강화를 위해, 현재 국한된 기능을 담당하나 광역경제권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심의대상을 확대
  - 현재 균특법상 광역경제권 협력사업에만 국한된 심의기능을 벗어나 광역경제권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심의기능을 부여
  - 이 경우에는 광역위의 운영규정에 심의대상이 되는 사항을 열거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
- 현재 광역위의 법정기능 가운데 일부기능은 소관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기능수행에 따른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
  - 계획수립이나 사업관리 및 평가관한 포괄적 기능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 지역위와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

#### □ 광역위 운영준칙의 보완

- 현재 지역위의 운영준칙은 광역위의 운영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만 제시하고 있는 실정임
- 협력사업 발굴, 연계·협력사업 재원분담, 사업관리 평가등에 관한 구체적 운영준칙은 불비되어 기능수행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큼으로 이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를들면 광역경제권 발전사업의 평가관리는 광역위의 기능으로 법정화되어 있으나 평가대상, 수준, 내용등이 명확하지 않고 지역위와 역할

분담도 구체화되어 있지 못함

## 2. 광역위와 지역위 간의 협력·지원 강화

### □ 수평적 협력파트너십 형성

- 광역위와 지역위 간 현재 수직적 상하관계를 지양(운영준칙 시달, 조직 및 인력, 예산 통제등)하고,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여 광역권경제 발전을 위한 공동생산적 접근을 정착

### □ 지역위의 행·재정적 지원

- 지역위는 광역위, 사무국,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국가에서 기본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력자, 지원자적 역할을 수행
- 광역위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수집하고 이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지발위 내에 「광역위 운영개선 T/F」를 설치

### □ 모범적 광역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광역위 운영을 활성화하여 광역위가 명실상부한 광역경제권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위 차원에서 제도운영의 보완은 물론 인센티브를 강화
- 광역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모범적 광역위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써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

### 3. 광역위의 운영 내실화

#### □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확충

- 사무국의 법정기능(회의준비, 부의안건작성, 조사·연구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직 및 인력 확보가 필요
  - 사무직원의 정원은 권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2,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최소 필요인력을 확충
- 특히, 사업관리 및 평가를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여 자체평가 기능을 확보

#### □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

- 자문단 구성을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명망가로 구성하되, 분과별 구성은 실질적 지도·자문이 가능하도록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하는 2원화 구성 체제를 도입
  - 특히, 본회의는 분과위에서 전문적으로 검토된 사안에 대해 종합적 심의·의결기능을 수행
- 자문단 구성시 광역위원회 위원등과 중복되지 않고, 권역별 지역내 전문가가 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구성

#### □ 광역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내실화

- 광역위가 중심이 되어 지방중기청, 지방노동청, 지방상의, 산단공, 금융기관등 권역내 유관기관을 포함하는 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
  - 워크샵, 간담회, 사업설명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재원분담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
- 특히, 광역위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내 지지

(support)기반 구축은 물론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참여형 거버넌스를 형성

#### 4. 광역위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

##### □ 광역위와 광역자치단체 간 적정관계 정립

- 광역위는 광역자치단체와 상호신뢰를 기본으로 기능적으로는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협력관계를 유지
  - 광역위가 지나치게 관주도로 운영되어 지자체에 예속되게 되면 각계각층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용이 불가능하고 단체장의 친위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 광역위가 민간의장을 중심으로 광역위 활동을 자율적 의지로 전개하면서 행정기관과 대등한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와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바, 지방의회와의 정기적 간담회, 광역위 위원참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광역위 전국협의체 구성

- 권역별 광역위 간 공동학술대회 및 운영 간담회 개최, 정보교류, 자료교환, 워크샵개최등 다양한 학술 및 운영교류를 위해 전국 단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
- 전국협의체는 지역위와 정기적 간담회 및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해 운영애로 타개 및 개선 방안을 건의

##### □ 국외 유사기관과의 교류 확대

- 광역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영국의 RDA, 프랑스의 Prefect 등과 정기적 학술대회 개최, 정보교류 및 방문등을 통해 상호학습 기회를 활성화

## <참고문헌>

- 금창호(2004), “지방자치단체조합 활용요건의 비교분석”, 지방행정연구 제 18권 제 3호
- 김길수(2008), “광역행정 實效化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제 22권 제 2호
- 김은경·이상대·송병락·강형우·김정태(2008), 「광역경제권 형성 방안 및 추진전략」, 경기개발연구원.
- 박양호(2003), “프랑스의 계획계약제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지역발전협약제도 필요”, 국토정책 Brief 13호, 국토연구원
- 배준구(2004), “프랑스의 지방분권 이후 지역정책”, 국토계획 제 39권, 국토계획학회
- 배준구(2009), “프랑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영 사례”, 한국행정학회 2009년 공동학술대회.
- 부산·울산·경남 발전연구원(2008), 「동남권 공간구조변화와 지역발전방안」(공동연구)
- 소순창(2007), “일본의 대도시 특례와 광역행정제도에 관한 연구”, 아태연구 제 14권.
- 이수장(1993),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방안”, 「지방행정연구」 제 8권 제 1호
- 이정석(2008), 「동남권광역경제협력체구축에관한연구」, 동북아지역혁신연구원 2008.3
- 정옥주(2007), “지역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관련 외국 사례와 시사점”, 국토정책 Brief 132호, 국토연구원
- 전북발전연구원(2008), 「전라북도와 시·군 간 정책협력 강화방안」
- 지역발전위원회(2009), 「지역발전과 광역경제권 전략」
- 차미숙(2008), 「유럽의 지역발전기구 RDA와 정책적 시사점」 국토연구원
- 차미숙 외(2008),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 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 (I)」, 국토연구원
- 충청권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2009), 「충청권 광역경제권발전계획」
- 한승준 (2004), “분권화시대의 지역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 38권, 한국행정학회.
- 행정안전부 (2008), 「광역행정 추진상황 통계」

CLG (2008), Delivering economic prosperity in partnership: The crucial role of the new local performance.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Publications

CLG(2008), Prosperous Places: taking forward the review of sub-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regeneration,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Publications

Dungey, Jo and Newman, Ines(1999), The New Regional Agenda Local Information Unit.

EU (2008), Joining Forces - Metropolitan governance & competitiveness of European cities.

Lefebvre, Christan(2004), "Bureaucratic Governability of Metropolitan Areas : International Experiences and Lessons for Latin American Cities", working paper.

OECD (2001), Devolution and Globalisation, Implications for Local decision-makers.

OECD(2006), Competitive Cities in the Global Economy, OECD Territorial Reviews, Paris: OECD.

OECD(2007), Linking Regions and Central Government, Contracts for Regional Development, Paris:OECD.

Rogers(2006), "Reforming regional and local development policy in France", Land Use Policy, Vol. 23.

<http://www.pref.osaka.jp/seisaku>

<http://www.soumu.go.jp/singi/pdf>

<http://www.soumu.go.jp/singi/singi.html>

<http://www.cas.go.jp/jp/seisaku/doushuu/kondankai.html>

[http://www.cas.go.jp/jp/seisaku/doushuu/kondan\\_index.html](http://www.cas.go.jp/jp/seisaku/doushuu/kondan_index.html)

<http://www.cas.go.jp/jp/seisaku/doushuu/zeizaisei/dai2/siryou3.pdf>

<http://www.cas.go.jp/jp/seisaku/doushuu/dai15/siryou2.pdf>

<http://www.idea.gov.uk>

<http://www.emra.gov.uk>

<http://www.parliament.uk/>

<http://www.maaforum.org.uk>

<http://www.communities.gov.uk/citiesandregions/thesubnationalreview/>